

碩士學位論文

住民自治센터의 發展方案에 關한 研究

- 濟州市地域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吳 南 錫

碩士學位論文

住民自治센터의 發展方案에 關한 研究

- 濟州市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姜 英 勳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吳 南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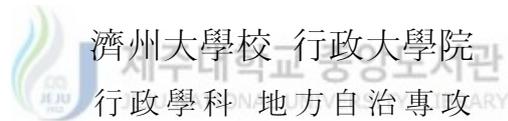
住民自治센터의 發展方案에 關한 研究

- 濟州市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姜 英 勳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7月 日



吳 南 錫

吳南錫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및 성격	5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5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6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모형	7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7
2. 주민자치센터의 접근 및 운영모형	9
제3절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사례연구	14
1. 일본의 공민관 및 자치회	15
2. 독일의 공회당	18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및 설치현황	21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및 추진과정	21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현황	24
1. 전국 개관	24
2.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28

제 4 장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32
제 1 절	전국 및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비교분석	32
1.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32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37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재원 확보현황	43
4.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44
5.	주민자치센터의 홍보현황	46
제 2 절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47
1.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 미흡	47
2.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취약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단순화	50
3.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열악	53
4.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 어려움	54
5.	주민자치센터 홍보 미약	54
제 5 장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58
제 1 절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	58
1.	주민참여 방안	58
2.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	59
제 2 절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개선방안	61
1.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방안	61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61
제 3 절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확충방안	64
1.	국·도비 지원확대	64
2.	주민자치센터 자주재원확보	64

제 4 절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64
1. 전문강사 확보방안	64
2.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65
제 5 절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홍보방안	66
제 6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3
ABSTRACT	76
부 록	78
1. 제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78
2. 오라동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	84
3. 제주시주민자치센터 주요프로그램 운영현황	88
4. 제주시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97

표 목 차

<표2-1>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개발단계	13
<표2-2> 주민자치센터의 유형의 종류	13
<표2-3> 자치회의 기능	17
<표2-4> 공회당의 기능	19
<표2-5> 독일과 일본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개요	20
<표3-1> 동(洞)기능전환추진과정	23
<표3-2> 시도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1단계)	26
<표3-3> 시도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2단계)	27
<표3-4> 전국 대비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28
<표3-5> 사무조정 내역	29
<표3-6> 주요 이관사무 실제 이관현황	29
<표3-7> 시군구·읍면동간 공동수행 사무 현황	30
<표3-8> 존치인력 조정 내역	30
<표3-9> 한시기구보강현황	31
<표4-1>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전국)	33
<표4-2>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제주시)	34
<표4-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전국)	35
<표4-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제주시)	36
<표4-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제주시)	36
<표4-6>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현황 (제주시)	37
<표4-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전국)	38
<표4-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제주시)	40
<표4-9> 프로그램 선정방법 (제주시)	41

<표4-10>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제주시)	42
<표4-11>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제주시)	42
<표4-12> 수강료 징수 효율 (제주시)	42
<표4-13> 시설비 내역 (제주시)	43
<표4-14> 운영비 현황 (제주시)	44
<표4-15> 민간단체 참여현황 (전국)	45
<표4-16>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제주시)	46
<표4-17> 전문강사 활용현황 (제주시)	46
<표4-18> 주민자치센터 홍보·교육 실시현황 (제주시)	47
<표4-19> 동아리(동호회) 구성 현황 (제주시)	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기본골격이 마련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게 개편·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출범 이후 지방의 자치권 강화, 각종 규제권 및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행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가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전세계는 새로운 자유 무역체제로 돌입하게 되어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게 되었다.¹⁾

지방자치행정이 체계가 잡혀가면서 기존의 읍·면·동의 대민 접촉기능 중 많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거나 이관되어도 무방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의 발달은 먼 거리 이동을 쉽게 하였으며, 각종 정보통신의 발달은 가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더욱 기존 읍·면·동의 역할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사는 최저수준의 복지요구에서 최적수준의 복지요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²⁾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의 추진으로 새로운 주민자치공간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은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동의 행정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는 기능전환으로 발생하는 여유시

1) 김필두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p.1.

2) 김필두외,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갑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p.2.

설과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문화·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즉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00년도에 전국 시·구의 동 단위에 일제히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읍·면 지역도 현재 일부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간활용 측면이 강하여 대부분 취미교실, 건강스포츠교실, 정보화교실 등 문화·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적인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도 낮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정책이라는 점과 각 자치단체별로 취미,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부족으로 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강사 등)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자원봉사역할 미흡으로 읍·면·동직원이 센터운영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고유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의 부담문제 역시 열악한 지방재정에 적신호를 나타내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 미흡,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취약성 및 프로그램운영의 단순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열악,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 어려움, 주민자치센터 홍보 미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등은 초기 시범운영에 제도화된 뚜렷한 지침이 없어 제 각각 운영되다 보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나 방향이 혼동을 가져 왔었지만 이제는 총체적인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해야 하는 도약 단계이므로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줄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 지역사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에 필요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여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문화프로그램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민공동 관심사업 등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활성화해 나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터를 명실공히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제주시지역에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전국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
후 제주시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제주시지역에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의 운영현황과 전국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문헌을 통한 사례분석 등을
종합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
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주시를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자의 근무 직장이며 초기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당시 담당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행정서비스, 센터의 운영프로그
램 등이 타 지역에 대해 우수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지대하며
과감한 예산투자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주시에서는 지난 2002
년도에는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한 2002년
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일도2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선정
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일도2동과 이도2동이 종합부문에서 우수동으로 뽑혔으며
개별사례에서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오라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동으로 뽑혀 전국
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제주시는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
어 시민들의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2004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10.20~10.22까지 제주시에서 개최될 예정
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다.

시기적 범위로는 2000. 10. 5 제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밝혀 둔다.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전문서적 및 논문, 학술지, 각종 정부 간행물과 행정자치부에서 발간된 문서와 제주도 자료를 활용하는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제주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위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주민자치센터가 본격 운영된 지 3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와 2003년 상반기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평가자료(제주시, 2003. 6) 및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실태 서면점검보고서(제주시, 2003. 5) 등 관련자료, 기존의 논문, 문헌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의거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시행 초기부터 확대 시행단계까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경험과 현재 일선 동의 행정책임자로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습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2 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및 성격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한 이후에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³⁾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삼고있는 자연부락 혹은 지역공동체(Community)⁴⁾를 근거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정보의 교환, 여가의 선용,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집회시설이다. 즉 가까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연대성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레크레이션,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임으로 봉사적, 민주적 조직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집회시설이다.

동일한 지역에서 몇 가지의 공통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상호간에 신뢰감이 있는 집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훈련받는 조직이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사실, 오늘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참여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광대하고 행정의 전 영역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3) 김필두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한국 지방행정연구원,1999), p.31.

4) 우리나라의 경우 동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이므로 매키버(R.M.Maclver)의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커뮤니티는 지역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지역성과 공동체의식 측면에서 정의되며 지역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관념, 공통된 습관 및 전통, 공속감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체의식은 우리의식(we-feeling), 역할의식(role-feeling), 의존의식(depended-feeling) 등을 의미한다 (Hallman, 1987 : 33-38)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인구 약 1만 3천명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가 하나의 주민참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상향적인 주민참여 체제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참다운 주민자치의 기반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며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선진국인 구미나 일본과 같이 주민에 밀착하는,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주민복지, 지역문화, 행정문화, 행정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주민자치센터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뿌리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생적 자치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의 자생적 자치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밑거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조직체계의 변화가 요구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조직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중심의 민주적인 조직구조가 아니고 중앙의 경제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지향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도 주민의 문화적 욕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욕구 등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주민의 문화·복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욕구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변신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새롭게 변화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커뮤니티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커뮤니티적 성격은 그 지역의 역사, 전통 등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모형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은 행정의 연장선에 있는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제 3섹터적 성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3섹터 조직들의 일반적 특성인 민간적(private)이고 비영리적(non-profit)이고, 자원적(voluntary)이며 자치적(self-governing)인 성격을 구현할 때만이 주민자치센터로의 자기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행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서도 그 목적을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화되고 광역단위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모든 문제를 주민이 직접적 목적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으며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위임하여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동단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이하에 보다 직접적인 생활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참여에 대해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기능(필수적인 기능)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추가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할 필수 기능으로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서 기능과 선택기능으로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자치실현을 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1) 필수적인 기능

(1)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

동의 기본 자치활동은 주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영역 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치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경험의 반복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자치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제 1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2)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종래 동사무소의 주요 기능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호적 등의 제증명 민원의 발급과 각종 행정·취업정보 자료 제공 등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등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소개 등의 홍보 활동도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이라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계보호, 상담, 자활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 전문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2) 추가적인 기능

(1) 주민편익 지원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의 기초단위로서 주민생활의 근거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회의, 중고품 교환, 농산물 직거래, 예식장 등 주민편익 시설로서의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교양·취미 강좌,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5) 김찬호 '도시행정과 커뮤니티' 자치행정, 1998. 4.

주민편의 시설과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 문화·정보 지원

본격적인 지방자치 새 시대로의 궤도 진입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와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의 호전으로 인해 보다 윤택하고 다양한 삶을 누리기 위한 주민들의 욕구도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심지어 문화 공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는 이용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소규모의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전시회나 소규모 공간, 각종 문화·교양 강좌, 주민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민간 협력·지원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역별 주민 자생조직의 활동의 중심이 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로 자원봉사 모임을 조직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을 근간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주민 조직인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청년회 등이 주인 의식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활동을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다.⁶⁾

2. 주민자치센터의 접근 및 운영모형

1)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접근

주민자치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6) 경상북도 연구단,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10.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대해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내린다.

앞으로의 지역행정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단순한 민원업무의 처리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을 때, 동사무소에 시설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주민생활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접근 방안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접근방안은 외형적으로는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동 사무적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 기능전환의 접근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과 주민자치의 정착이라는 측면이 그것이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다계층제는 행정 계층간의 의사결정 비용이나 거래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행정계층, 구조를 축소·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동사무소의 종합 행정적 지위를 폐기하고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생활서비스 기능만 남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민자치의 정착 측면에서 보면 읍·면·동사무소 기능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부속시설과 공간을 주민복지·문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양자의 관계는 물론 상호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천방안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주민자치의 실천적 접근이 어려울 것이며, 주민자치의 정착만을 강조할 경우 그 동안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서 동사무소의 편리한 접근성의 기능들이 과거와 같이 수행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자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두 가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난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주민자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모색하여 혼선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모형

매키버(R.M.Maclver)는 커뮤니티(communitiy)에 대해서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첫째는 우리들이라는 의식(we-feeling), 둘째는 역할의식(role-feeling), 셋째는 의존의식(dependence feeling)이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주민자치위원회가 체계화·조직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주민이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육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중간계급을 설정하고, 그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은 도입단계-정착단계-활용성단계 등 각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도입단계는 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을 통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나 운영규약을 제정하며,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골격을 갖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한편, 정착단계는 관련 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읍·면·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홍보가 끝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관·민 합동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단계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조직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순수한 주민자치 조직(組織)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순수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대표도 민간이 되고,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도 민간 자치조직이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으로는 행정 주도형, 민·관 합동형, 주민 주도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볼 때 바람직한 운영방식인 주민자치센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시설

7) Hallman, Howard. W. Neighborhoods. London : Sage, 1987.

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외의 바자회 개최, 회의실 이용료 등으로 약간의 자치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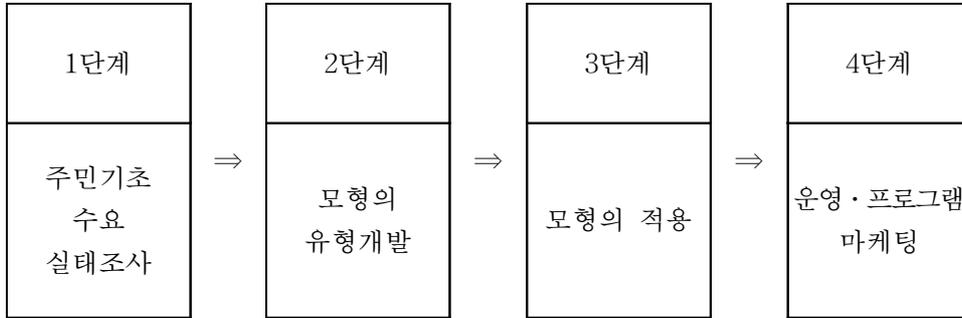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주민자치센터는 초기 시범 등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상부기관의 관련 공문서를 보면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민관을 모델의 근간으로 삼고, 각종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헌신과 봉사에 있으므로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행정주도운영→민관합동운영→주민주도운영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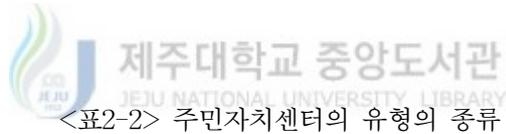


<표2-1>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개발단계



자료 : 문병집, 지역사회개발론, 1996.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재정도 당분간은 행정지원비에서 출발 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고 각종 주민자치 재원을 개발하여 자립하여 정규적인 확인과 평가의 피드백 과정이 필수적이다.



<표2-2> 주민자치센터의 유형의 종류

대 유 형	I 기능중심 유형	II 기능유형	III 지역 유형	IV 운영모형
세 부 유 형	1. 민원행정중심형 2. 문화여가중심형 3. 사회교육중심형 4. 주민복지중심형 5. 주민편익중심형	1.복합형 2.특화형	1. 저소득일반주거밀집형 2. 중산층아파트 밀집형 3. 도농복합형 4. 상업·산업밀집형 5. 학교·공공시설밀집형	1. 행정주도형 2. 민간주도형 3. 주민주도형

자료 : 문병집, 지역사회개발론, 1996.

제 3 절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사례연구

오늘날 세계 각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광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결점 보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밑에 행정보조단위(sub-municipal-unit)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읍·면·동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 활동에 있어 주민참여를 허용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회합장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응집성을 조성한다. 또한 자기 고장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 이익 관철을 위하여 행정단위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더욱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부 공공서비스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유용한 조직이 되며 주민의 자조적인 노력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4년 이래 포클랜드시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해 왔다. 포클랜드에는 89개의 주민협의회(Neighborhood Associations)가 각 지역을 대표하면서 8개의 구역연합(District Coalitions)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생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범위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통상 200가구 이상을 대표한 구역연합회(District Coalition Boards)는 포클랜드시의 주민협의회 담당관의 공식적인 접촉창구이다. 구역연합회는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이웃간의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역연합회는 비영리 독립법인으로서 주민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되며 시 행정부와 시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각 구역 연합회는 시청이나 커뮤니티센터에 구역사무실을 운영한다. 포클랜드시의 주민협의회 담당관은 구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중재프로그램, 지역주민프로그램, 시민상담소프로그램, 난민프로그램, 대도시 노인들의 인간관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포클랜드시는 2001년 150만 달러를 8개의 구역연합회에 지원하였으며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였다. 구역연합회는 이 돈의 일부를 주민협의회 사업에 위해 전달하고 일부는 자체운영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 구역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재원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관리와 급여를 정할 수 있다. 구역협의회는 통상

8) 최창호, 한국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청구논문집, 1979), p.75.

2명의 전문간사와 1명의 운영자를 두고 있다. 시정부와 주민협의회 담당관은 주민협의회회의 뉴스레터와 유인물 인쇄비 및 운송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아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문화·미디어·스포츠성의 산하 기관인 영국 예술평의회는 전후 국민의 사기양양과 일체감 형성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하여 1946년 아트센터(Art Center)를 설치운영 중이며 1970년대 중반에서 10여년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건물은 인수하여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일이 유행하였으며 1980년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술, 레크레이션 등 문화·예술 향수의 장으로 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금제공기관의 대표자, 교육관계자, 언론인, 작가,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지역예술협회가 읍저버로 참가한다. 총괄감독, 예술감독, 운영책임자는 경험있는 공무원, 프로그램 전반의 최고 책임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이 담당하며 상근 직원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며 자원봉사자를 절반이상 활용한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 등 경영수익사업과 후원금, 임대수입으로 운영된다.⁹⁾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모델 등 행정환경이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로서 행정체도가 비슷하고 독일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고 국가를 통한 강력한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였던 점 등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1. 일본의 공민관 및 자치회

1) 공민관(公民館)제도

1949년 문부성 차관 통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한 공민관¹⁰⁾은 일본의 생애 학습 관련 시설로, 다른 나라에선 그 예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시설로 지역을 기반으로

9) 김필두,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서울특별시, 2000), p.12.

10) 전후 일본 농촌 향토 부흥의 기운을 배경으로 지자체의 민주적인 문화시설인 공민관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60년대 이후 시작된 농촌사회의 해체와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공민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63년 종합적인 교육·문화센터로 재정비되었다. 이후 그 명칭을 시대에 걸맞게 ‘커뮤니티센터’, ‘시민센터’, ‘문화의집’ 등으로 바꾸고 그 기능과 역할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나누었다.

정현경, “일본 커뮤니티센터 소개”, 수원여성회.

주민이 ‘모이고’, ‘배우고’, ‘상호교류’를 하는 場으로, 교양 · 문화 · 스포츠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이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사회 교육 시설이다.¹¹⁾

즉, 시 · 정 · 촌 기타 일정한 구역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 문화적인 사업과 산업을 진흥시키는 지도 및 정보 교환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민관의 설치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민관의 특징은 지역성, 시설성, 전문성, 공공성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²⁾

첫째, 공민관은 그 목적상 주민들 상호간의 생활연대의식을 유지시키는 지역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한편 지역폐쇄성에 빠지기 쉬우므로 넓게 외부 세계의 변화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또는 민법 제34조의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국립 · 현립 공민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민관은 교육시설의 성격이 강하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용시설과 설비가 필요하고, 특히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재, 교육용구 등의 시기 적절한 도입이 중요하다.

셋째, 공민관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 기술, 열의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전문직원에게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운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공민관은 공립 또는 사립을 불문하고 공공성을 가지며, 교육의 기회 균등, 비영리성,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은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2) 자치회(町會, 町內會)제도

(1) 성격 및 특징

흔히 정회 · 정내회로 불려지는 자치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치적 친목 조직이며 임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認可地釋團體」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¹³⁾

11) 日本生涯教育會編, 「生涯學習辭典」(東京:東京書籍,1992), p337; 김필두외, 「앞의 책」 재인용.

12) 傷土二郎外, 「現代公民全書」(東京:東京書籍, 1989), pp.32-36; 김필두외, 「앞의 책」 재인용.

13) 현재 동경도의 23개 특별 구내에는 4,302개의 자치회가 있는데, 그 중 103개가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

자치회는 가입단위가 세대(50~200세대)이며, 관할지역의 모든 세대는 자동적·강제적으로 가입되고,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여 활동내용이 다양하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보완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원칙적으로 가입이 자유로워 거주지역 외의 자치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개는 의무적으로 가입, 현재 전국민의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2) 조 직

자치회는 회장(1명)·회계·감사·간사 등 10명 내외의 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회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들은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활동한다.

자치회는 사업부서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3) 기 능

자치회의 기능으로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행정보조기능 두가지가 있다.<표 2-3>

<표 2-3> 자치회의 기능

기능	주민자치조직의 기능	행정보조기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증진 · 주민상호연락 및 친목도모 (경조사업) · 문화·스포츠 · 교통안전 및 방법 · 방재 및 재해구조 · 공해방지 · 보건위생 · 간이보험 · 축제 등의 개최 · 기타 녹화사업, 폐품수집, 수익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와의 연락, 도 및 구의 각종위원회 참여 · 구에 진정, 주민의 요망사항전달, 주민의사 전달 ·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으로 부터의 수탁사무수행 <p>* 총리부, 일본적십자사, 공동모금회, 경시청(방범연락소), 소방청(소방협력회), 청소(청소협력회), 구청(각종 사무위탁) 등으로부터의 각종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p>

자료 : 김필두, 앞의 책, pp. 31~32.를 표로 재구성.

(4) 시사점

공민관과 자치회조직은 일본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린 기초적인 시민조직이다. 비록 초기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행정편의도모와 국민수탈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직화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의 자율조직으로 성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떼었는데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하여 지방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은 도도부현 - 시정촌의 2계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도시인 동경의 경우 인구가 최고 70만 명인 構造가 있고, 川琦市 등도 인구가 50만이 넘는데도 하부행정 기관이나 출장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민관·자치회 등이 하부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별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둘째, 서구사회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위기·정체성의 위기 등을 경험한데 반해 일본사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비교적 느슨한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자율적 방법활동·교통질서 등이 상당히 잘 지켜지는 이유는 자치회라는 강력하고 잘 짜여진 자율질서유지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독일의 공회당

1) 성 격

지역마다 설치된 공회당은 일선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법적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여러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표는 지역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공회당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수가 1/3로 줄어든 1937년 전국적으로 단행된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 과정에서 탄생하였는데, 대략 500명에서 2만명까지의 게마인데(Gemeinde)가 3~4개가 통합된 것으로 각각의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단지 공회당으로만 존립하게 된 것이다.

2) 조 직

특별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대표자와 그 지역출신 의원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된다.

대표자는 공식적 기능은 없으나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대소사를 주관하며 통합시장의 자문관 역할, 통합시의 부시장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명망가이며 낮에 행정업무를 수행하여도 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그 지역 출신인 통합 지방의회 의원이 공회당 대표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수당만을 받게 된다.

3) 기 능

공회당대표와 지역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행정과 민원관련 서비스제공 기능 및 시민대학 기능, 스포츠단체·취미단체·로터리클럽 등의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각종문화행사 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4> 공회당의 기능

기능	일반행정 서비스기능	시민대학 기능	문화행사 기능	주민자치 기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시장에게 지역 지원산업에 대한 지원요청 지역안내 지도, 관광명소, 역사 등의 소개 지역박물관, 도서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강사 초청강연회 개최 각종교양강좌, 취미교실, 직업관련 교육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음악교실, 과외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 카페, 유스호스텔, 극장 등 문화·예술의 장 제공 캠핑장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센터, 쓰레기 처리의 자율적 집행 각 지역의 묘지 설치 장소 결정 지역의 분실물 센터 기능 근린공원, 녹색지대 관리 주차구역 설정

자료 : 김필두, 앞의 책, p . 45.를 표로 구성

4) 재 원

재원은 자체재원과 시 정부의 지원재원으로 나뉜다. 자체재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시민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료·찬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 정부의 지원재원은 공회당이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을 시에 요구하면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다.¹⁴⁾

5) 시사점

독일은 자생적 주민조직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온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과는 달리 지역사회가 기반이 된 자생적 시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후 국민들을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국가가 주도하여 시민교육 실시 및 주민자치 실현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복잡한 지방행정구역 정리에 성공, 정리된 행정구역을 공회당이라는 주민조직을 통하여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 우리도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계층구조 조정작업이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2-5> 독일과 일본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개요

구분	독 일 형	일 본 형	
		커뮤니티센터	자치회(정회)
중심 시설	공 회 당	공 민 관	자치회관 (공민관을 위탁받기도)
성격	임의조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사회교육기관	주민자치조직
관리 운영 주체	특별한 조직 없음 지역자원봉사자, 청년회, 스포츠클럽회원 등이 자주적으로 관리운영	국립공민관, 사설공민관 (현재 국립공민관의 90% 이상을 민간위탁)	자율적 주민조직 (선거로 임원진 선출, 별도 사업부서 있음)
관할 구역	인구 500명~2만 명 사이의 법인격 없는 일선 지방조직 단위	기초자치단체당 6~7개	자생부락단위
형성 과정	1973년 행정구역개편의 일 환으로 정부가 계획적 추진	사회교육기관으로 정부 가 계획적으로 육성	주민의 자치적 친목 조직으로 성장

자료 : 김필두 외, 읍·면·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1999.

14) 김필두외, 「앞의 책」, pp45-46.

제 3 장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및 설치현황

제 1 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및 추진과정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계층 조정의 필요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점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한편, 정부와 행정체계가 시민 사회를 단순한 동원대상에서 자율적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규제와 통제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서비스와 정보제공자로서의 행정체계로 옮겨가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과 함께 그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가 되어 센터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 구성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 즉 동(洞) 기능전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지방행정계층의 합리적 조정을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2개의 자치계층과 1~2개의 비자치 행정계층 등 모두 3~4개의계층으로 이루어진 다층체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계층의 다단계는 각 계층간의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소지의 불명확, 행정처리의 지연, 주민의사의 왜곡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3~4단계 중 한 개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물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능전환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동행정 업무의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다. 행정인력에 대한 조정의 필요에서 기능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읍면의 인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읍면사무소의 행정인력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또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의 발달로 각종 민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동 행정이 맡아왔던 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사무소의 업무분류를 보면, 시군구의 보조사무나, 유관기관과의 중복, 대행업무 등이 본연의 업무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커 동 행정의 존립자체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변화된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이전까지 동 행정은 주민중심의 민주적인 조직구조가 아닌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중앙의 경제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지향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욕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 등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논의는 IMF 이후 정부의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주제 아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계획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1998년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추진과정은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하여 시범실시단계를 거쳐 제 1 단계(1999~2000)에서는 자치구와 일반시의 1,681개 동에 확대시켜 나가고, 제 2 단계(2000~2001)에서는 도농복합시와 군단위로의 확대순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전국 94개 시구 27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하다가 2000년도에 전국 94개 시·구의 전 동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다. 94개 시·구 중 대부분이 1~3개의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성동구, 부산은 수영구와 사상구, 대구는 동구, 인천은 경수구, 광주를 서구, 대전은 유성구, 울산은 중구, 경기도는 군포시와 의왕시, 강원은 동해시에서 전체 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다. 제주시의 경우도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999년 3월에 이도2동과 봉개동 등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2000년 12월에 나머지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일제히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범실시에 이어 1단계로 2000년도부터 전국 94개 시구의 1,681개 동을 대상으로 동 기능전환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무·인력 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였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으로는 전국 140개 시·군 1,863개 읍·면·동을 대상(주민자치센터는 총796개 읍·면·동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현재 일부 설치가 완료된 지역과 추진중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읍·면·동기능전환시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초창기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이 시책을 재고해달라는 공식적인 건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상 현재는 읍·면 지역의 경우 기능전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연차적·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위임된 상태이다.

다음의 <표 3-1>은 총괄적인 주민자치센터 추진과정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3-1> 동(洞)기능전환추진과정

주요내용	추진일자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계층 축소(읍면동 폐지) 건의	1989.7
새정치 국민회의, 정기국회정책자료 읍면동 축소	1996.9
내무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동기능전환 보고	1998.1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	1998.2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시안) 마련	1998.8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확정 시달	1999.2.5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	1999.4.7
1 단계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278개동)	1999.7~1999.12
시범실시 운영 종합 평가	1999.11~1999.12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	2000.1~2000.2
1 단계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 시달	2000.3.6
동 기능전환 추진실태 종합 점검	2001.8~2001.9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 -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	2002.3.7

자료 :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 2002. 5. 31.

제 2 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현황

1. 전국 개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제 1단계(1999~2000)와 제 2단계(2000~2001) 사업으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 1 단계와 제 2 단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제 1 단계 동 주민자치센터 추진>으로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94지구 1,681개 동) 중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은 94개 전 시·구(100%)에서 완료된 상태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1,681개 동 중 1,665개 동(99.1%)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1,656개 동(98.5%)에서 완료된 상태이다.<표 3-2> 참조)

<제2단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추진>으로는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140시군 796개 읍·면·동(361읍·면+435동)) 중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는 117시·군(83.5%)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126시·군 (90%)에서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796개 읍·면·동 중 595개 읍·면·동(74.7%)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은 시군별 1~2개를 우선 설치하고 동은 전동에 설치토록 하여 현재 총 796개 읍·면·동 중 425개 읍·면·동(53.4%)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796개 읍·면·동 중 595개 읍·면·동(74.7%)에서 완료된 상태이다.¹⁵⁾<표 3-3> 참조)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522개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 1999년 23개 자치구 6동을 시범 실시한 후, 2000. 3. 6 행정자치부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나머지 462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1. 6월에 522개 전동의 기능전환을 완료하였다. 2000년 3월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동사무소의 총 655개의 사무 중 179개 사무를 존치시키고 476개 사무를 이관시키도록 하였으며, 일부 사무 29건에 대해서는 존치·이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사무소 인력조정에 있어서는 동별 인구 1만 명 단위로 구분하여 평균적으로 17명 정도이던

15)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것을 11명으로 축소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인력을 동별로 1명씩 담당하도록 하였다¹⁶⁾.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1개 동사무소 당 6,000만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국비는 20%인 1,400만원, 시비는 35%인 2,100만원, 구비는 45%인 2,700만원이었다(하마승·강황선, 2002 : 80). 현재 2002년 5월 조사에 의하면 94개 전 시구에서 사무·인력 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1,681개 동 중 1,665개 동(99.1%)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656개 동(98.5%)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¹⁷⁾

16) 2002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은, 인력조정은 기능전환 전 8,939명(동당평균 17.1명)에서 기능전환 후 5,759명(동당평균 11.0명)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저도 시행 초기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실제로는 1,119명을 파견하여, 기동근무형태로 보강·운영하고 있어 현재는 총 6,878명(동당평균 13.2명)이 근무하여 동당평균 3.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조정내용

(단위 : 명)

구분	기능전환 전 (A)	기능전환 후 (B)	실 제 (C)	증 감	
				A-B	A-C
정 원	8,939	5,759	6,878	△3,180	△2,061
동별평균	17.1	11.0	13.2	△6.1	△3.9

사무조정에 있어서는 총 655개 사무에 대하여 각 자치구의 조정결과 구평균동에 준치하는 사무가 217개 사무, 구로 이관하는 사무가 438개 사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무조정내역

(단위 : 명)

행자부지침			자치구 조정결과(구평균)		
계	존치	이관	계	존치	이관
655	179	746	655	217	438

17)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표 3-2> 시도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1단계)

구 분	대 상 시구수	대 상 동 수	자치법규 정 비	자치센터 설치조례	위원회 구 성	자치센터 설 치
계	94	1,681	94 (100%)	94 (100%)	1,665 (99.1%)	1,656 (98.5%)
서 울	25	522	25 (100)	25 (100)	521 (99.8)	514 (98.4)
부 산	15	216	15 (100)	15 (100)	216 (100)	216 (100)
대 구	7	134	7 (100)	7 (100)	129 (96.2)	129 (96.2)
인 천	8	117	8 (100)	8 (100)	117 (100)	117 (100)
광 주	5	87	5 (100)	5 (100)	87 (100)	87 (100)
대 전	5	79	5 (100)	5 (100)	79 (100)	79 (100)
울 산	4	46	4 (100)	4 (100)	46 (100)	46 (100)
경 기	16	314	16 (100)	16 (100)	304 (96.8)	302 (96.2)
강 원	3	26	3 (100)	3 (100)	26 (100)	26 (100)
충 북	1	28	1 (100)	1 (100)	28 (100)	28 (100)
충 남	-	-	-	-	-	-
전 북	1	40	1 (100)	1 (100)	40 (100)	40 (100)
전 남	1	26	1 (100)	1 (100)	26 (100)	26 (100)
경 북	-	-	-	-	-	-
경 남	1	15	1 (100)	1 (100)	15 (100)	15 (100)
제 주	2	31	2 (100)	2 (100)	31 (100)	31 (100)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표 3-3> 시도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2단계)

구 분	대 상				자치법규 정 비	자치센터 설치조례	위 원 회 구 성	자치센터 설 치
	사무인력조정관련		주민자치센터설치관련					
	시군수	읍면동수 (동수)	시군수	읍면동수 (동수)				
계	140	1,863 (441)	140	796 (435)	117개시군 (83.5%)	126개시군 (90%)	595개읍면동 (337읍면/258동) (74.7%)	425개읍면동 (259읍면/166동) (53.4%)
서 울	-	-	-	-	-	-	-	-
부 산	1	5	1	5	1	1	5 (5/0)	5 (5/0)
대 구	1	9	1	1	1	1	1 (1/0)	1 (1/0)
인 천	2	20	2	20	2	2	20 (20/0)	19 (19/0)
광 주	-	-	-	-	-	-	-	-
대 전	-	-	-	-	-	-	-	-
울 산	1	12	1	12	1	1	12 (12/0)	8 (8/0)
경 기	15	192 (44)	15	96 (38)	15	15	90 (49/41)	89 (48/41)
강 원	15	167 (48)	15	76 (48)	13	11	35 (24/11)	30 (22/8)
충 북	12	124 (21)	12	60 (21)	11	11	60 (39/21)	52 (34/18)
충 남	15	206 (37)	15	71 (37)	15	15	63 (48/15)	49 (28/21)
전 북	13	208 (49)	13	104 (49)	12	13	101 (54/47)	68 (38/30)
전 남	21	272 (43)	21	95 (43)	15	21	75 (47/28)	38 (27/11)
경 북	23	337 (99)	23	124 (99)	13	14	30 (10/20)	16 (11/5)
경 남	19	299 (100)	19	129 (100)	16	19	100 (25/75)	47 (15/32)
제 주	2	12	2	3	2	2	3 (3/0)	3 (3/0)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2.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1) 제주도지역 개관

정부의 읍·면·동기능전환 시책에 의거 제주도에서도 전체 43개 읍·면·동 중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0년도에 제주시 19개동, 서귀포시 12개동 등 총 31개동이 기능전환을 완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단계로는 북제주군 1개읍(구좌읍), 남제주군 2개 읍·면(남원읍, 안덕면) 등 총 3개 읍·면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등을 완료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해나가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3-4> 전국 대비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구 분		대상지역	설치지역	미설치지역
제주도	제주시	19개동	19개 동	
	서귀포시	12개동	12개 동	
	읍·면	12개읍면	3개 읍면	9개 읍면
전 국		2,477(1681개동, 796개 읍면)	2,036(1,656개 동,380개 읍면)	441(25개 동, 416개 읍면.)

자료: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자치부, 2003. 10.

2)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국민의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읍·면·동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제주시에서도 2000년 10월에 제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19개 전 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99년 3월에 이도2동과 봉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운영하여 1999년 7월 동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건설, 건축, 공유재산관리, 보건소, 음반비디오 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2001년 11월에는 사무·인력조정안을 확정하여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사무·인력조정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청소업무 등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종전대로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3-5> 사무조정 내역

구 분	지 침			운 영 실 태		
	도 시 지 역	농어촌 지 역	원격지	도 시 지 역	농어촌 지 역	원격지
계(건)	655			649		
동 존치사무(건)	179			228		
시 이관사무(건)	476			421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3-6> 주요 이관사무 실제 이관현황

○ 주요 이관사무

기능분류	지 침 상 이관사무	전 부 이 관	일부 이관		
			계	이 관 (평균건수)	존 치 (평균건수)
계	59 건	35건	24	14건	10건
1-1-4 전산통계	14			건	건
2-1-4 투 표	9	9		건	건
2-1-5 선 거	12	12		건	건
2-6-5 재난관리	5		5	3건	2건
3-5-1 청 소	19		19	11건	8건

○ 동존치 사유

단위사무명 (지침상이관사무)	존 치 사 유	향후이관 여부	
		가 능	곤 란
2-6-5 재난관리	· 재난 발생시 상황처리의 신속성과 피해상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동 에서도 재난관리 필요	○	
3-5-1 청소사무	·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효율적으로 청소민원 해결, 쓰레기처리가 필요하며 동 존치시에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음으로 동과 공동으로 수행필요		○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3-7> 시군구·읍면동간 공동수행 사무 현황

단위사무명	공동수행 사유	시행일
2-6-5 재난관리사무	· 재난 발생시 상황처리의 신속성과 피해상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동 에서도 재난관리 필요	2000.11.3
3-5-1 청소사무	·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효율적으로 청소민원 해결, 쓰레기처리가 필요하며 동 존치시에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음으로 동에서 수행필요	"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동 기능전환으로 시 본청에 한시적으로 1과 3담당 및 각 동별로 전담직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세무부서에 1과 3담당을 증설하는데 그쳐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단일 업무만을 전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표 3-8> 존치인력 조정 내역

구 분	정 원				현 원 (E)	증 감		
	기능전환 이전		기능전환 지 침 상 (C)	기능전환 후(D)		A-D	C-D	E-D
	'99.1.1 현 재 (A)	사무·인력 조정시행일 적 전(B)						
총 계(명)	304	298	211	268	260	36	-57	-8
동평균(명)	16	16	11	13	14	2	-3	-0.5

※ 기능전환 후(D), 현원(E) : '03.4.30 현재 정·현원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제주시의 경우 인력을 변경조정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지침보다 정원을 증원한 사유로는 정부지침에 따라 유형별 인력조정시 동별 행정수용, 인구수, 면적, 사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 인력 1명, 추가준치 사무 및 동별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실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인력1명, 사회복지인력 1명 등 각각 증원배치하였다. (청소사무준치에 따른 인력·청소차량 기사 36명 배치)

둘째, 현원 추가 배치 현황은 기능직 36명과 사회복지요원 13명 등 총 49명이며 현원을 추가로 배치한 사유는 주민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청소행정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소차량기사 등을 동에 추가 배치하고 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부득이하게 증원조치한 것이다.

<표 3-9> 한시기구보강현황

실과.팀.단명	담당	정원	담당 업무	설치일
세무2과	3개담당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재산세,종토세 등)부과 및 징수 ○ 지방세 전산운영 및 시세구제업무 ○ 시세채납액 정리 총괄 	2000.11.13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제 4 장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전국 및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비교분석

1.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주민참여란 이론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으로 부여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에게 또는 계획의 형성, 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여 관여하는 행위 즉,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기능과 영역은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점차로 확대 다기화, 전문화되는 반면에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그 수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서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자치행정이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문이 바로 주민참여부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부문도 행정주도형 참여가 아닌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또는 자생조직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수는 전국현황을 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평균 165,323명으로 동당평균 101명 정도로서 여자가 73%, 남자가 27%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제주시의 경우는 <표 4-2>에서 보듯이 1일평균 927명으로 동당평균 49명으로 여자가 53.3%, 남자가 46.7%로써 전국현황에 비해 비교적 낮은 주민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계층별로는 전국의 경우 성인여성 58.9%, 어린이·청소년 21.5%, 성인남성 12%, 노인 7%, 기타 0.6% 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는 성인여성 38.9%, 어린이·청소년 34.9%, 성인남성 16.4%, 노인 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현황에 비하면 비교적 고른 계층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주민자치센터 이용 현황 (전국)

구 분	1일평균 이용 주민수	성 별		이용 대상별				
		남	여	어린이·청 소년	성인 여성	성인 남성	노인	기타
계	165,323 (100.9)	45,340 (27%)	119,983 (73%)	35,572 (21.5%)	97,395 (58.9%)	19,734 (12%)	11,582 (7%)	1,040 (0.6%)
서울	70,481 (138)	16,504	53,977	16,064	41,665	7,359	5,156	237
부산	18,787 (88)	5,672	13,115	2,826	12,515	1,682	1,562	202
대구	7,794 (60)	1,870	5,924	1,013	4,717	1,247	701	116
인천	10,296 (88)	3,500	6,796	2,882	5,250	1,544	617	3
광주	8,142 (93)	1,943	6,199	2,328	4,901	595	318	
대전	7,220 (95)	1,670	5,550	1,010	4,616	1,155	433	6
울산	2,898 (63)	695	2,203	289	1,887	521	173	28
경기	27,636 (94)	9,948	17,688	6,632	14,925	4,145	1,658	276
강원	1,066 (41)	384	682	469	426	138	33	
충북	2,492 (89)	672	1,820	523	1,571	299	99	
충남	-	-	-	-	-	-	-	-
전북	3,760 (94)	676	3,084	346	2,614	338	451	11
전남	1,690 (65)	625	1,065	270	1,114	202	104	
경북	-	-	-	-	-	-	-	-
경남	765 (51)	283	482	260	352	115	38	
제주	2,296 (74)	898	1,398	660	842	394	239	161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표 4-2>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제주시)

구 분	이 용 주민수 (1일평균)	성 별		이용 대상별				
		남	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여성	성인 남성	노인	기타
총 계	83,410명 (927명)	38,950명 (46.7%)	44,460명 (53.3%)	29,070명 (34.9%)	32,490명 (38.9%)	13,680명 (16.4%)	8,170명 (9.8%)	-
동평균	4,330명 (49)	2,050	2,340명	1,530명	1,710명	720명	430명	-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보고서, 2003. 5.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002. 11. 25 개정된 조례에는 일부 의결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인원은 15명이상 25명 이내이다. 동장은 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능단체 대표, 지역유지 등에 편중함이 없이 각계 각층에서 균형있게 위촉하며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안에는 1년으로 하고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의회 의결과정에서 종전대로 2년으로 하고 그 대신 위원장은 연임불가,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고문도 동별로 3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 40.9%, 직능단체 18.2%, 주부 10.7%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는 <표4-4>에서 보듯이 자영업 26.2%, 농축산업 15.2%, 직능단체 14.5%, 주부 11.0%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과 직능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전국)

구 분	계	자영업	통리 반장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가	지방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농축 산업	기타
계	36,774 (7,670)	15,042	1,587	6,683	3,951	1,638	1,637	1,457	993	960	2,826
서울	10,519 (2,098)	3,434	563	2,801	1,364	324	501	474	263	13	782
부산	5,190 (1,029)	2,764	79	610	420	260	251	191	88	110	417
대구	3,090 (345)	1,873	100	274	204	115	120	80	128	71	125
인천	2,644 (608)	1,190	129	486	260	131	56	109	45	63	175
광주	2,185 (554)	875	127	290	193	55	140	71	54	127	253
대전	1,651 (343)	731	40	219	154	106	74	74	28	38	187
울산	1,019 (343)	365	34	240	117	63	49	43	36	18	54
경기	7,419 (1,990)	2,819	296	1,181	959	424	318	270	216	357	579
강원	535 (99)	143	54	180	26	8	7	21	47	19	30
충북	606 (176)	180	58	106	67	52	15	28	18	37	45
충남	-	-	-	-	-	-	-	-	-	-	-
전북	872 (202)	291	54	115	94	51	57	35	30	40	105
전남	564 (122)	263	24	71	58	30	29	22	10	14	43
경북	-	-	-	-	-	-	-	-	-	-	-
경남	356 (80)	94	21	94	23	15	12	15	26	33	23
제주	124 (24)	20	8	16	12	4	8	24	4	20	8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표 4-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제주시)

○ 직종별

구 분	계	자영업	통리 반장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가	지방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농축 산업	기타
총 계	454명 (109)	119 (15)	25 (3)	66 (23)	50 (50)	18 (3)	35 (4)	16 (0)	16 (6)	69 (2)	40 (4)
동 평균	454명 (109)	119 (15)	25 (3)	66 (23)	50 (50)	18 (3)	35 (4)	16 (0)	16 (6)	69 (2)	40 (4)

※ 여성의원 : ()에 기재

○ 분야별

구 분	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 예술계	사 회 복지계	종교계	관계	경제계	기타
총 계	454명 (109)	31 (6)	6 (1)	19 (6)	-	-	31 (1)	72 (9)	295 (86)
동 평균	454명 (109)	31 (6)	6 (1)	19 (6)	-	-	31 (1)	72 (9)	295 (86)

※ 여성위원 ()에 기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지방의원 참여현황

전 체 의원수 (A)	참 여 내 역				미참여 의원수 (C=A-B)
	계(B)	위원장	위 원	고 문	
16명	16명	-	-	16명	-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4-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제주시)

프로그램 직접운영			프로그램 강사			자치센터 시설 자원봉사	
동	프로그램수 (읍면동평균)	참여인원 (프로그램당평균)	동	프로그램 수	참 여 인 원	동	참여인원 (1일평균)
19개동	57개 (3개)	4,566명 (240명)	19개동	16개	16명	19개동	71명 (4명)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지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기준 동당 6,000만원 씩(국비 30%, 도비 35%, 시비35%)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동당 4,200만원씩(국비13, 도비13, 시비13백만원) 지원하여 기존의 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하는 수준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발족하였다.

동사무소의 시설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수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아래 <표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주시의 경우 동당 평균 5개정도의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현황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소재동	프로그램수	시설수
일도 1동	17	7
일도 2동	53	8
이도 1동	21	3
이도 2동	31	9
삼도 1동	20	7
삼도 2동	9	5
용담 1동	15	2
용담 2동	18	6
건 입 동	14	5
화 북 동	33	4
삼 양 동	15	7
봉 개 동	22	8
아 라 동	6	4
오 라 동	39	5
연 동	22	3
노 형 동	12	3
외 도 동	15	3
이 호 동	4	3
도 두 동	14	3
계(평균)	380(20)	95(5)

자료: 제주시, 2003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결과, 2003.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13,55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동별로 보면 평균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문화여가분야 49%, 정보화 등 시민교육분야 17.4%, 주민편익분야 9.2%, 지역사회진흥분야 8.6%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4-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전국)

구 분	계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사 회진흥	기타
	총계	평균							
계	13,559	8.2	785 (5.9%)	6,658 (49%)	915 (6.8%)	1,248 (9.2%)	2,360 (17.4%)	1,161 (8.6%)	432 (3.1%)
서울	4,973	9.7	256	2,410	302	464	1,048	292	201
부산	1,125	5.2	45	661	76	125	135	65	18
대구	566	4.3	32	271	51	110	45	12	45
인천	764	6.5	29	367	35	59	170	56	48
광주	595	6.8	84	189	37	84	68	114	19
대전	577	7.5	31	253	111	79	44	43	16
울산	379	8.2	22	256	19	13	30	33	6
경기	3,110	10.5	175	1,613	177	227	680	178	60
강원	109	4.2	4	48	22	1	15	18	1
충북	183	6.5	7	97	16	18	11	26	8
충남	-	-	-	-	-	-	-	-	-
전북	289	7.2	4	187	32	2	19	45	
전남	142	5.4	1	86	16	21	15	3	
경북	-	-	-	-	-	-	-	-	-
경남	134	8.9	43	36	3	23	10	19	
제주	613	19.7	52	184	18	22	70	257	10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제주시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급적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시 되도록 인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아래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기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개 동에 380종류의 프로그램으로써 동당 평균 20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교육·생활·체육 관련프로그램이 182개로 48%, 지역복지및사회진흥 관련 프로그램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풍물교실, 댄스스포츠교실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활용도가 많은 자치센터 시설현황은 <표 4-8>에서 보듯이 대부분 문화의 집으로 시설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법은 <표4-9>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공무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단독 결정 25%, 설문조사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15%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은 <표 4-10>에서 보듯이 주민자치센터 당 2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은 <표4-11>에서 보듯이 평일의 경우 1일 평균 9시간 정도이며 공휴일에는 14개동에서 37개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센터 실정에 따라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수강료의 경우 조례상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소재동	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역복지및사회진흥 프로그램	계
일도1동	9	8	17
일도2동	26	27	53
이도1동	12	9	21
이도2동	17	14	31
삼도1동	8	12	20
삼도2동	4	5	9
용담1동	5	10	15
용담2동	8	10	18
건입동	8	6	14
화북동	14	19	33
삼양동	7	8	15
봉개동	11	11	22
아라동	6	-	6
오라동	13	26	39
연동	11	11	22
노형동	7	5	12
외도동	6	9	15
이호동	4	-	4
도두동	6	8	14
계	182(48%)	198(52%)	380

자료 : 제주시, 2003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결과, 2003. 6.

○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읍면동명	프로그램명	1회 평균 이용주민수	수강료 (월)
1위	이도 2동	가요부르기	80명	무료
2위	연 동	건전가요 교실	70명	"
3위	일도 2동	어린이 풍물교실	40명	"
4위	화 북 동	세이프생활체조	40명	"
5위	삼 양 동	댄스스포츠교실	35명	"

○ 활용도가 많은 자치센터 시설 현황

구 분	설 치 읍면동	시 설 명	1일 평균 이용주민수	주 용 도
1위	연 동	문화체험실	60	도서,비디오,인터넷체험등
2위	"	문화관람실	50	문화,취미교실 운영
3위	일도2동	인터넷부스	48	인터넷 이용
4위	이도2동	문화관람실	41	프로그램강좌 및 회의
5위	용담2동	비디오부스	21	비디오감상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4-9> 프로그램 선정방법 (제주시)

계	주민자치 위 원 회	읍면동공무원 + 주민자치위원회	설문조사	설문조사+ 읍면동공무원	설문조사+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공무원
242개(%)	61개(25%)	122개(50%)	12개(5%)	8개(3%)	35개(15%)	4개(2%)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4-10>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제주시)

구 분	계	공무원	일용직	공익근무	공공근로	기타
총 계	41명	19명	5명	4명	13명	-
자치센터 평균	2명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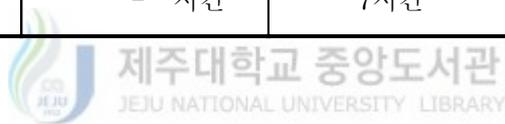
※ 작성기준 : 2003.4.30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4-11>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제주시)

○ 평일·토요일

1일평균 운영시간	일과시간전	일과시간	일과시간후
9시간	- 시간	7시간	2시간



○ 공휴일

개 방			미 개 방
읍면동수	개방시설	개방시간(평균)	
14개동	37	8	5개동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4-12> 수강료 징수요율 (제주시)

구 분	기 준	수강료(원)
문화·취미	○ 동장과 협의 후 위원회에서 결정 ○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 고려 후 정함	-
생활체육	"	-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재원 확보현황

1) 시설비 현황

제주시 관내 전 동사무소에 투자된 시설비는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동당 평균 119백만원으로써 행정자치부 기준 60백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당초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동당 42백만원씩(국비 14, 도비 14, 시비 14백만원) 지원되었으나 제주시의 경우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을 투입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마무리함으로써 전국의 여느 자치단체 보다 비교적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시설비 내역 (제주시)

구 분	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읍면동 청사 개·보수 소요액(천원)				
	계	개·보수	신 축	계 (평균)	시설비 (평균)	시 설 부대비 (평균)	자 산 취득비 (평균)	기타 (평균)
계	19개동	19개동		2,256,000 (118,736)	2,214,000 (116,526)		42,000 (2,210)	
동	19개동	19개동		2,256,000 (118,736)	2,214,000 (116,526)		42,000 (2,210)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2) 운영비 현황

프로그램 운영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동당 15백만원(국비 5, 도비 5, 시비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연간 운영비(강사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는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당 평균 34백만원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시설비 재원을 용도별로 보면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운영비의 70%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열악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4> 운영비 현황 (제주시)

○ 재원별

구 분	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계	2,108,650천원	1,823,650천원
	자치센터수	19개	19개
	동평균	110,982천원	95,982천원
2000	계		
	자치센터수		
	동평균		
2001	계	742,100천원	647,100천원
	자치센터수	19	19
	동평균	39,058천원	34,058천원
2002	계	728,500천원	633,500천원
	자치센터수	19	19
	동평균	38,342천원	33,342천원
2003	계	638,050천원	543,050천원
	자치센터수	19	19
	동평균	33,582천원	28,582천원

○ 용도별



구 분	계	강 사 수 당	일 반 수 용 비	시 설 장 비 유 지 비	주 민 자 치 위 원 수 당	기 타
계	2,108,650천원	300,000천원	1,181,450천원	83,400천원	285,000천원	238,800천원
2000						
2001	742,100천원	100,000천원	476,100천원	34,000천원	57,000천원	75,000천원
2002	728,500천원	"	388,600천원	27,000천원	114,000천원	98,900천원
2003	638,050천원	"	316,750천원	22,400천원	114,000천원	84,900천원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4.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아주 절실한 문제이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센터 시설·관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선호도

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강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으로 민간단체 참여현황을 보면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541개 단체가 참여하여 동당 평균 2.2개 단체가 프로그램 개발(11.1%), 프로그램 운영(85.2%), 위탁운영(3.7%)을 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제주시의 경우는 <표 4-16>에서 보듯이 총 16개 동에 98개 단체가 참여하여 동당평균 6개 단체가 프로그램 개발(17.3%), 프로그램 운영(81.7%)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5> 민간단체 참여현황 (전국)

구 분	민간단체 참여 읍면동수	참 여 단 체		참 여 방 법		
		총계	평균	프로그램 개 발	프로그램 운 영	위탁 운 영
계	654	1,541	2.2	172 (11.1%)	1,314 (85.2%)	55 (3.7%)
서울	230	482	2.0	20	426	36
부산	111	370	3.3	46	318	6
대구	11	17	1.5	2	13	2
인천	34	40	1.2	7	33	-
광주	49	115	2.3	-	114	1
대전	25	53	2.1	2	51	-
울산	11	35	3.2	2	33	-
경기	76	187	2.4	41	141	5
강원	17	37	2.2	-	35	2
충북	11	11	1.0	-	11	-
충남	-	-	-	-	-	-
전북	10	10	1.0	-	10	-
전남	26	31	1.2	26	5	-
경북	-	-	-	-	-	-
경남	18	31	2.1	2	29	-
제주	25	122	4.9	24	95	3

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 2003. 8.

<표 4-16>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제주시)

○ 민간단체

구분	민간단체 참여 읍면동수	참여 단체		참여 방법		
		총계	평균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운영	위탁운영
계	16개동	98단체	6단체	17단체 (17.3%)	81단체 (82.7%)	단체
동	16개동	98단체	6단체	17단체	81단체	단체

○ 자원봉사자

구분	자 원 봉사자수 (1일평균)	성 별		활동분야별			계 층 별								
		남	여	강사	운영 지원	기 타	주부	회사원	자영 업자	전문 가	직능 단체	민간 단체	학 생	노 인	기 타
총계	5,282명 (57)	2964	2318	2812	240		1140		2688	399	655	380			
동평균	278명 (13)	156	122	148	130		60		142	21	35	20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표 4-17> 전문강사 활용현황 (제주시)

구분	강사수 (1일평균)	활 용 별			
		공무원	자 원 봉사자	유급강사	기 타
계	8명 (4)		1	7	
동평균	8명 (4)		1	7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5. 주민자치센터의 홍보현황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는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과 주민자치센터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홍보현황은 자료화가 되지 않아 소개를 생략하고 제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18>에서 보듯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을 피드백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표4-19>참조)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들의 홍보실태 역시 제주시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8> 주민자치센터 홍보·교육 실시현황 (제주시)

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	세미나 토론회	연찬회	소식지등 발간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발표회	우수센터 견학	주민자치 위원교육	기타
제주시/ 19개동	3회/ 114명	3회/ 526명	23종/ 55,000부	-	3회	3회/ 76명	3회/ 1,131명	-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4-19> 동아리(동호회) 구성 현황 (제주시)

구 분	구성 읍면동수	동아리(동호회)수	참여인원 (동아리당평균)
계	12개동	33개	911명 (28명)
동	12개동	33개	911명 (28명)

자료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실태서면점검자료, 2003. 5.

제 2 절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1.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 미흡

1) 주민참여의식 저조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스스로 원하는 프로그

램을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명실공히 주민이 곧 주인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스스로 가꾸어 나가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역현안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결집시켜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프로그램이든 사회진흥 프로그램이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만으로도 될 수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1)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주체(행정기관)의 마인드 부족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을 지닌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도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야말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주체인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자생단체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미흡

지역단위에서의 활동주체인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부녀회 등 관변단체나 기타 자생단체,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이들 단체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발성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대부분 스스로의 참여가 아닌 상급단체의 지시나 전시효과 등을 기대하여 참여하는 소극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1인 1자생단체 자진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동 관내 자생단체들의 실상을 보면 1인 2단체 이상 심지어는 5개 이상의 단체에서도 중복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공동체 회의 문화 미숙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서부터 상의하달식인 지시일변도의 습성에 익숙해진 상태로 어떠한 사안을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문화에 상당히 미숙한 것이 현실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수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 등 조금씩 회의문화에 익숙해져가고는 있지만 지금도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유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의 또한 자기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고 흑백논리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우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회의 기법을 가미한 성숙된 회의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자치위원회

(1)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부족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은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으로써 책임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유지와 직능단체의 대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주민참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되고 동의 대표성을 내세워 예우나 받으려는 경향도 많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종전의 개발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동정의 최고 단체로서의 위상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과 자치활동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동 개발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역유지와 자생단체장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한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만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써 일선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량도 줄어들고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주민자치위원 구성비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의 참여는 5.5%, 여성위원은 24.6%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지역유지와 직능단체의 대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정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순수한 자원봉사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3) 행정의 관변단체화 및 정치성 문제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관변단체나 직능단체의 전·현직 임원들이거나 지역유지들이라서 과거의 개발위원회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국지방의 상당수 동에서 지방의원 및 예비의원 후보들이 정치적 우위확보를 위한 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당직자들까지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치색을 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시의 경우 조례상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의 참여를 배제하고 -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 가능 - 당연직 고문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2.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취약성 및 프로그램운영의 단순화

1) 시설규모의 한계

행정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된 동사무소에서 정부의 읍면동기능전환 정책에 의거 갑작스런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별 표준면적을 제시하였으나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확보에 그친 실정이다. 당초 제주시의 경우 1개동당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시설비로 42백만원씩(국비13, 도비13, 시비13백만원) 투자하여 기존공간을 재정비한 수준으로 마무리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 지원하는 문화의 집으로 개조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로써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문화의 집으로 시설된 동사무소는 현재 이도2동, 봉개동, 용담2동, 삼도2동, 일도2동, 연동 등 6개동으로 이곳에는 동당 4억원씩(국비 2억, 시비2억)이 투자되어 A/V감상실, 인터넷 부스, 노래방 등 각종 문화시설이 완비되어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시설과는 대조를 이룬다.

2) 프로그램운영

(1) 단순 프로그램 및 일부 인기강좌 치중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참여가 비교적 쉬운 요가교실이나 스포츠댄스 등 건강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등 일부에 치중하므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양, 취미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교체하는 등 다방면으로 운영을 시도하여야 하나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2) 다양한 계층 참여 미흡과 운영시간대 한정

프로그램의 운영시간대가 거의 공무원 근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는 주부 계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청소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양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또한 주부 중심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앞으로 야간 시간대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사용료 징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부터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운영비 등 상당한 경비부담이 뒤따르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기준 연간 운영비는 15백만원(국비 5백, 도비5백, 시비 5백만원)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은 무료자원봉사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취지인데 반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업에 바쁘고 사설학원들도 많은데 누가 과연 무료자원봉사 강사로 참여해 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강사의 질이 낮으면 수강생도 참여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유급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 개설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운영

비가 풍부해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 없이 순수 자원봉사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주민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4) 지역내 사설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인한 마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강료를 적게 받고 운영하고 있어 인근에 있는 사설학원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설학원과 중복되지만 어쩔 수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

주민자치센터는 명실공히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곳이다. 지역현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미, 교양, 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와 노하우가 필요하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6) 시민단체(NGO) 참여 미흡

실질적인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자신들의 활동영역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도 있고 운영경비 또한 더이 소요될 소지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단체가 순수한 자원봉사체제로 주민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절약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지역문화, 생활공동체로 자리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적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여 선진문화시민의식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협의·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란 점이다.

전국의 지역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높이는데 급급하여 문화·사회복지·생활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인기위주의 손쉬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지역도 많다.

제주시의 경우도 19개 동별로 시설공간과 주민 수에 따라 많게는 수 십개에서 단 몇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가 손쉬운 인기프로그램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기가 있는 유급전문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실질적인 무급자원봉사를 확보하기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강사의 질이 낮은 경우 주민들도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주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행정자치부의 연간 기준액 1,500만원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자치센터가 강사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등 부수적인 경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제주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운영비 비율이 7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수록 운영비는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공동체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회비 징수 또는 지역별 수익사업 등의 발굴이 적극 필요한데 비해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도비 지원방안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 어려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강사를 모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들어 각급 교육기관, 사설기관, 복지시설 등에서도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순수하게 무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강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힘든 일인 것이다. 또한,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불가피하게 유료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순수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활동을 그만 둘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정기간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유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인식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하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선호하고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경우 각계 전문가를 대량으로 위촉하고 순수 자원봉사 역할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유지나 전·현직 자생단체 임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역할이 미흡하여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5. 주민자치센터 홍보 미약

주민자치센터는 제도의 취지상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비록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단계상 현재는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운영주체는 주민이며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의 주인 또한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정도는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를 좌우하는 성공의 지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에 관한 문제해결의 우선점을 주민 자신에게 돌린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행정기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독점적인 운영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명백한 책임을 갖는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무리 주민에게 이로운 제도라 할지라도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여 주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참여통로 또한 개설되지 않는다면 주민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홍보에도 엄연히 주체와 객체가 있다. 그러나 홍보가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쌍방향 홍보 방식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제주시의 홍보방식의 대부분은 단방향방식이다. 일방적인 언론홍보, 소식지 등의 인쇄물, 프로그램안내 전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참여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서 한번 본 후에 재고의 여지없이 묻혀버리는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홍보방식은 장기적인 홍보효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인천 카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에서 인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지역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를 알게 된 방법으로 ①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35.6%) ②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30.0%) ③동사무소의 홍보책자를 통해(18.9%) 순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의 홍보가 지역주민에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알고 있다는 주민 중에 현재의 주민자치센터가 과거의 동사무소에 비해 더 편해졌다고 응답한 주민(36.2%),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주민(37.9%), 더 불편해졌다는 응답(0.8%)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민원 불편은 그다지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제주시 지역실정하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제주시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홍보 실태를 살펴보면 동 기능 주민자치센터 전환 운영과 홍보 팸플렛, 책자, 리후렛 등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안내(수강생 및 강사 모집광고), 지방언론을 통한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 홍보,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보고회, 학술세미나를 통한 홍보,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발표회, 수료증 수여 등을 단순방식으로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실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홍보 방법이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민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보다 단순히 동 행정이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민간시설과의 중복 문제, 낮은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시설 공간의 협소, 주말이나 동 근무시간 이후의 활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 지역 주민 참여와 수강생 모집 안내 홍보를 위해 일반 민간부문 홍보 안내와 같이 “전문강사에 의한 기초에서 활용까지, 홈페이지 작성요령, 각종 자격증 대비 훈련”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지역 주민이 느끼기에 실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홍보가 사실상 어렵고 “정보화 기초교실 운영, 인터넷 활용 교육” 등과 같이 주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일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주부, 노인, 학생 등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준을 일정하게 운영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Know-how가 다소 부족하여 프로그램 개설, 수강생 모집, 강사 확보, 프로그램 운영상황 홍보 등 행정적인 홍보 활동에 그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련된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다소 역부족인 점이 있다.

넷째, 언론 홍보에 있어서 단순하게 동정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동상황에 대한 보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기획 취재 및 심층보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 게재하는 것 보다 언론 생리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다소 부정적인 비판 시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나 담당공무원 등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언론을 통한 심층적인 홍보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 중에 각종 기초질서, 공중질서 등 사회질서 확립 운동과 주민단합 행사개최, 지역발전 방안 도출 등 사회진흥 프로그램

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함양에도 많은 역할을 해야하고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식개혁 운동은 기존 새마을 운동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자생단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속 추진하여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에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고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여섯째, 무엇보다 효율적인 주민 홍보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많은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흥미를 느낄만 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부족하고, 맞벌이 부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위하여 팸플렛, 안내문, 리후렛 등을 각 가정에 배포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기대하는 만큼 주민 생활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곱째, 각급 사회단체(NGO)와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 교류가 미흡하여 현재 각 분야별로 환경, 경제, 문화, 외국어, 전문기술 등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만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하여 시민사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인 행정기관과 객체인 주민이 동시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쌍방향방식의 홍보방식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항시적으로 접근가능한 홍보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5 장 제주시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제 1 절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

1. 주민참여 방안

1)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설 등의 준비는 완료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원활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단위로서 참여보다는 조직이나 집단단위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 동호인 조직, 각종 직능단체조직 등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는 자치조직에게는 주민자치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해당자치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한, 관할구역 내 기업체의 각종 사내 동호회, 취미서클 등을 주민자치센터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으로 심어 줄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동질감과 애착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취미, 학습 등과 관련된 서클 활동조직과 학부모관련 조직인 학부모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주민자치센터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주민자치센터에 골고루 반영하고, 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자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주민 대표회를 구성하는 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각급 자생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에서의 자생단체 회원은 쓰레기 처리, 자연보호 등 각종 행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고, 마을의 각종 행사 주관과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보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

의 계몽과 선도, 행정시책의 홍보 등의 업무도 같이 수행한다. 따라서 자생단체 회원은 읍·면·동의 행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여론이나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홍보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 단위에서 공무원, 주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운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한다면 주민참여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는 직능별 자치조직원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시민교육의 활성화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선진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은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시민의식 수준은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크게 세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시민을 하나의 주체적 시민으로서 깨닫는 의미이고 둘째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보루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역량을 조직해내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¹⁸⁾

2.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1)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기회 확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편의와

18) 홍덕률, 1996 : 469-502.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여성계 및 각종 동아리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하여 주민의 대표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장의 일방적 위촉보다는 각계각층의 추천 등 주민들의 직접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과 공모제 등을 통한 자율참여의 폭 확대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단순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의 현안사항 토의, 각종 캠페인 활동, 사회교육운동, 주민자치 활동 등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부 의결기능을 가졌지만 대부분 심의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의결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책임자도 현재는 동장으로 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갖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한 강화에 앞서 주민자치위원의 자발적이고 자원봉사적인 의식 변화도 요구된다. 동 지역의 지역유지나 베풀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대표자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을 위한 사심없는 봉사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지원강화

주민의 대표자인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향상과 정보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하며 타 지역 위원과의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실비제공 등의 인센티브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1.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방안

1)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관심 제고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확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동기능전환시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의 변신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전국적·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행정자치부 기준인 60백만원에도 못미치는 동당 42백만원(국비 14, 도비 14, 시비 14)을 지원하여 형식적인 시설을 갖춘 정도이다.

이와 반면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의 집은 동당 400백만(국비 200, 시비 200)을 투자하여 시설함으로써 주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19개동 중 6개동이 문화의 집으로 시설되어 있어 동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설비의 확충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국비 및 도비 등 재원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다목적 활용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전부 확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시설과 인근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다목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한다. 다목적회의실도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칸막이 등을 이용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운동장, 근린공원 등 야외장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시설까지 커뮤니티 시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1)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제고

주민을 활발히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 확보와 유익한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주시의 경우도 좋은 시설과 유능한 강사가 운영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에는 많은 수강생이 몰려 대기하는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몇 수강생이 참여하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정도이다.

유능한 강사확보를 위해서는 무급자원봉사자를 기대하는 어렵고 예산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생활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동 단위의 별도 프로그램운영으로 인근 지역과 중복사례가 나타나 수강인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동간의 협의 또는 시단위의 조정을 통하여 권역별로 일정 프로그램을 분담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의 경우는 동간 경계도 멀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살려 권역별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시간대 운영

일본의 공민관은 아침·저녁 시간대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오라동의 경우도 농촌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주로 저녁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적절하게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주민의견조사 실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의 결과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는 물론 지역특성을 살리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5) 강사진 교육과 활용방안 강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다양한 만큼 그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강사진도 다양하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들에게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시단위에서 자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는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강사진의 의견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피드백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1회성 단기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 수준과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 프로그램은 물론 수요자의 수준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연구해야 할 분야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도와 시·군 단위 또는 중앙단위에서 모델을 개발하여 읍·면·동에 파급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동아리활동 유도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였던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발표회, 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수강자 본인의 잠재력 향상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도 참여욕구를 가짐으로써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자들도 자체동아리를 결성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을 가짐으로써 여가활동 증진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활동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함께 공연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 3 절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확충방안

1. 국·도비 지원확대

각 기초단체별로 재정력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재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5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50%의 예산을 광역단체의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 자주재원 확보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적인 활동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치센터별로 회비, 사업수입, 행정업무위탁수입, 임대수입, 수강료 등 다양한 편이나 수입은 시설여건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및 사업의 양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1. 전문강사 확보방안

전문강사 확보에 있어서는 사설학원이나 인근 문화원 등에서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지원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수강생의 숫자만으로 그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방식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강사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동별로 운영중인 프로그램현황을 분석하여 시 단위로 전문강사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동별로 보상되는 전문강사 강사료를 감안하면 시 단위에서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월별로 일정액을 보상하고 관리

하여 동별 운영 시간대를 조정·배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2.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1) 자원봉사 모집방법의 다양화로 안정적인 자원봉사자 확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해 나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공동체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는 관내 주민, 그 중에서도 가급적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찾는게 좋다.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으면 이들 중에서 뜻있는 분을 접촉하여 스스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한 동아리 전체를 자원봉사자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외에도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민자치센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무료이용권 제공뿐만 아니라 경력인정, 취업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취업이나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해 주고 자원봉사 근무기간을 동일한 업종의 경력으로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NGO)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NGO를 활용한 시민의식개혁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절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홍보방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에 대해서 문화·복지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계각층의 참여보다는 주부와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궁극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남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을 홍보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 하거나 문제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 주체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실무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및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훌륭한 강사를 확보해도 지역 주민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용과 성과들을 잘 포장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함께 외적인 홍보도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중심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홍보방법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홍보 방안으로는

첫째, 가장 기본적인 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홍보 팜플렛 및 홍보책자 발간 배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상황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상황 언론홍보 등 종래의 행정 성격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홍보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민 선호도 조사, 프로그램 강사 공개 모집,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지역 주민 구체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홍보 Mind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홍보의 주체가 사람이므로 홍보 능력 강화는 그 전제 조건으로 프로그램 운영 능력 향상과 결부되므로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기법 습득과 홍보 교육은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질적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홍보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자체 홍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방송, 언론 등에 의한 홍보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실현되기는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방송, 언론기자를 초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상황 및 자치위원회 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것이 보다 친밀감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단체(NGO)와의 상호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하여 사회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적 활동상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각종 시민 의식개혁 프로그램,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강사진도 수준이 높을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홍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간의 상호 유대 강화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 즉, 대외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향토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강사를 위촉 우리고장 문화 유적지를 순회 등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다.

마을소식지는 지역 주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정다움을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매개체인 동시에 주민 홍보에 있어 각 가정에 배포되고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려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 측면에서 보면 소식지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홍보는 그 효과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

여덟째, 지역내 각종 봉사단체 및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등을 적극 유치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이들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사회의 건전한 활동 지원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홉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각종 취미 서클 및 주부모임 등을 육성 시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연동화 주부모임’ 등과 같이 관심 분야가 같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의 생활 중심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 주도록 해야 하겠다.



제 6 장 결 론

지난 1999년에 국민의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시행한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에 따라 탄생한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초창기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읍·면·동기능전환 시책 재고를 건의한 바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따라 전국 시·구의 동은 1단계로 기능전환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도·농 통합시와 군지역은 2단계로 시범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은 주민요구에 의해 상향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 관주도로 설치된 것이라는 점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제주시를 중심으로 전국현황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국의 주민자치센터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겠지만 본 연구자가 제주도 공무원으로서 초창기부터 동기능전환시책을 직접 담당하여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일제히 개선한 경험과 2년여 동안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 등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회복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리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행사부와 제주도 내부자료 및 관련논문 등을 참고로 정리하다보니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정도 지나고 있지만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문제점 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전방안 역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가급적 제주도 사례를 위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연구한 제주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논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주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 등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고 주민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력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보고받고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설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게되고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으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서비스 받기만을 바라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의식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변화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빨리 치우라고 행정당국에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는 주민 스스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설확충은 가급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간만이 아닌 관내 각종 공공시설, 필요하면 개인시설까지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수한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는 재원 부담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도비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주민들에게서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인 수입원을 발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과 유능한 전문강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무급 자원봉사자 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시 단위의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각동별로 일정 요일을 지정 순회 지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원봉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간단체(NGO)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관리 또는 프로그램 위탁운영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파트너십의 원칙을 잘 실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자치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의 수행을 목표로 초기에는 행정 주도하에 운영하고, 단계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커뮤니티센터'를 육성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 구상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각계각층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세계 각 국가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 활동에 있어 주민참여를 적극 허용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회합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응집성을 조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과 시·정·촌 지역내의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주민자치적인 자치회가 명실공히 지역의 공공적 기능 및 행정의 말단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독일의 공회당의 경우는 법적 기초단체는 아니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공회당의 대표는 그 지역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공회당에는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대표자와 그 지역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행정과 민원관련 서비스 기능, 시민대학 기능, 각종 문화행사 기능, 재활용센터, 쓰레기처리, 근린공원 관리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포클랜드시의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문제를 주민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해나가고 구역연합회에서는 비영리 독립법인의 지위를 갖고 시행정부와 시의회와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포클랜드시의 주민협의회 담당관을 구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아트센터 역시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하여 예술, 레크레이션 등 문화예술 공간 및 성인 교육의 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민관 및 자치회, 독일의 공회당, 미국 포클랜드시의 주민협의회와 구역연합회, 영국의 아트센터 등의 역할에서 보듯이 주민자치조직과 기존 자치단체로써의 행정정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듯이 주민자치센터 역시 이러한 기능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제주시의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의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못지않게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선진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도 20~30년의 세월을 거쳐서 정착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도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행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선진국 수준의 주민자치공간으로 확실히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앞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와 자원봉사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명실공히 주민자치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문헌

1) 저 서

- 경상북도연구단,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 연수대회 연구보고서」, 제 35회, 1993.
- 김안제,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서울: 대화출판사, 1994.
- 김필두 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김필두 외(주민자치센터연구팀),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갑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김필두·조석주,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 (I)- 동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8-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 열린사회 시민연합, 「주민자치센터, 무엇을 해야하나」, 2000.
- 열린사회시민연합, 「2001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사) 열린사회시민연합, 2001.
- _____, 「2002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사) 열린사회시민연합, 2002a.
- _____, 「주민자치센터 운영길라잡이 II」, (사) 열린사회시민연합, 2002b.
-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5.
-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7.
- 제주도·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상황”, 2002.
-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 사회발전과 법·정책연구소,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모색”, 2002.
- 제주시, 2003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평가, 2003. 6.
- 제주시,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실태 서면점검보고서, 2003. 5.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1997.
-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 1999.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1999.
 행정자치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 2000.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 200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JDI OPINION」, 2002.

2) 논 문

강기정,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강창봉,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김은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김익식, “제1기 지방자치제(’95.6~’98.5)의 평가”,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51호, 1998.
 김필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오기환, “주민자치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정일섭,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4호, 2001.
 함미경, “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2. 외국문헌

- Verba, Sidney, 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 Harper & Row Publisher.
- Sherry R. Arnstein, 1969, "A Ladder of citizen Paricipation", i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5, No.4: 216~224.
- Hallman, Howard W. Neighborhoods, London : Sage, 1987.
- Daltrop, Anne, "Politics and European Community", London : Longman, 1987.
- Rohe, william M. "Planning with Neighborhoods", North Carolina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 Peter F. Drucker, "The Community Of The Future", 1998.
- 日本生涯教育會編, 「生涯學習辭典」, 東京:東京書籍, 1992.
- 傷土二郎外, 「現代公民全書」, 東京:東京書籍, 1989.

Abstract

Feasibility and Assessment study of Jeju City community centers

Nam-seok Oh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oon Kang

To build up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 powers is the current trend in the world. We, in Korea, are not an exception. The opinion has been on the rise that the structure of our local administrative hierarchy, which has been kept without drastic changes since the time of Japanese Imperial rule, should be changed and adjusted according to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Especially since the sailing forth of the system of self-government, whose head was elected by popular vote, the local administration is being given much more weight and the local autonomy's influence on the national policy and economy is also increasing because of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and the handing over of various kinds of regulating and authorizing powers to the provinces.

In accordance with these demands of the times, the national government set up a new community space for self-governing, Community Center forwarded from the policy for transforming the functions of eup · myeon · dong」 in 100 tasks of the new government policies on February in 1998.

When it comes to changing the functions of eup · myeon · dong, we should approach that change not only to cut down on expenses by reducing the existing structure with its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but also to improve efficiency by computerizing the administrative work. We should focus on how to operate the Community Cent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itizens by realizing the citizens' autonomy and

raising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citizens' sake.

This thesis consists of six chapters to approach the main question of how to activate the Community Center by looking into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Centers in Jeju city. These chapters are:

- Chapter 1 Introduction - Purpose of the Study
- Chapter 2 Theoretical contemplation on the Community Centers
- Chapter 3 The introduction and 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centers
- Chapter 4 The current operating situations and problems of Jeju City's community centers
- Chapter 5 Plan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Jeju City's community centers
- Chapter 6 Conclusion

Especially Chapter three closely examines the current operating situations of the community centers, and then offers some alternatives that might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grams and systems of community centers in Jeju City.

Finally I think that the Community Center concept is not a one-time policy but an indispensable one for motivating the citizens to participate autonomously i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the citizens and social group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make efforts together so that the Community Center can take root successfully in the society.

부 록

1. 제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0. 10. 5 조례 제1842호 개정 2002. 11. 25 조례 제19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2002.11.25>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동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 ①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02.11.25>

제5조(기능)

-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주정차질서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 <개정 2002.11.25>
-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신설 2002.11.25>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1.25>
-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5>

제7조(운영)

-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 은 동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25>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25>
-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 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1.25>
-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11.25>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시 단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1.25>

제8조(자원봉사자)

-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1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전문개정 2002.11.25>

제11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2.11.25>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11.25>

제12조(주민참여)

-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한다.
-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5>
-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5>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1.25>

제16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5. 기타 동 개발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11.25>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신설 2002.11.25>
-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5>

제17조(구성 등)

-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 ②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대표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

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시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1.25>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11.25>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11.25>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시장은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1.25>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2.1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1.25>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25>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11.25>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5>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25>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002.11.2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오라동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

2003년 7월 9일 제정, 2004년 1월 1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제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고 함) 제24조에 의거 오라동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조례 제4조 제②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오라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자치센터')라 한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

제3조 (사용료 등)

-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 및 시설이용 등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단서조항은 분기 말 프로그램 운영 분석 결과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저한 예산부담이 예상될 경우 등이다.

제4조 (시설물 배상 등)

-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된 각종 기자재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친절한 문안으로 안내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② 프로그램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을 부주의로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적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프로그램 등 운영·관리

제5조 (운영·관리 프로그램)

-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풍물교실(기초, 고급)
 2. 생활요가
 3. 정보화교실(기초, 고급)

4. 일어기초교실
 5. 댄스스포츠교실
 6. 어린이풍물교실
 7. 기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프로그램
- ② 주민자치센터는 개설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폐지해야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① 당해연도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위원회 (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홍보분과, 자원봉사분과, 지역사회진흥분과, 관리·운영분과, 취미교실분과)를 구성하여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에 반드시 참여한다.
- ③ 각 분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분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및 각종행사, 육구조사 등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2. 자원봉사분과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직무배치,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일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3. 지역사회진흥분과 : 다양한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4. 관리운영분과 : 주민자치센터의 일반 운영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취미교실분과 : 주민들의 취미 및 문화적 욕구를 파악하여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합한 강사의 물색, 프로그램의 평가 및 후속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모색한다.

제7조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

- 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및 마을회관 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여건상 장소를 선정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용 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프로그램 운영장소에서 장소를 변경하고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 ① 주민은 누구나 [서식1]에 의한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교양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접수순서에 의해 배정한다.

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한 수강생은 같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다음 수강시 기존신청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 수강생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난 후 혜택을 주며, 당해 년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수강생은 [서식1]에 의한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의 '프로그램 이용자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수강생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 받을 수 없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되, 각 프로그램의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09:00~21:00

2. 토·일·공휴일 : 09:00~18:00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보수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사전에 이용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일지의 작성)

①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일 자치센터 운영일지 (이하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② 운영일지의 양식은 [서식3]과 같고, 프로그램 운영장소별로 따로둘 수 있다.

③ 운영일지는 수강생 대표 또는 자원봉사자가 기록·관리한다.

④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일지에 프로그램별 “특이사항”란을 둔다

⑤ 운영일지는 동장의 결재와 자치위원장의 확인을 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장소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수강생 대표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⑥ 제②항~제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미숙한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동장과 자치위원장의 결재와 확인을 득 하는 것으로 운영일지 작성을 가름할 수 있다.

제11조 (비치서류)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서식4]비치하여 작성을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자원봉사자의 활동

제12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동장은 규정에 의한 필요 경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 (자원봉사자 참가신청)

-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2]에 의한 자원봉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의한 자원봉사자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의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센터에 통보를 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시 [도식1]에 따라 제작된 자원봉사자 이름표를 지참,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프로그램별 대표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원봉사자의 활동방침을 결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출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사회봉사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배려한다.

1.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봉사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해 조례 제13조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또는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제주시주민자치센터 주요프로그램 운영현황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일도1동	컴퓨터교실	일도1동사무소	매주화,금,토	10:00~11:30	10	
	요가교실	"	매주월,수,금	17:00~18:00	40	
	풍물교실	"	매주 화,목	15:00~16:00	15	
	가요교실	"	매주금요일	14:00~16:00	30	
	노인기원방	"	연 중	09:00~18:00	10	
일도2동	스포츠댄스 (초급)	일도2동사무소	매주 월,화	09:30~10:30	40	
	노인댄스교실	"	매주 수,목	09:30~10:30	40	
	풍물교실	"	매주 화,목	11:00~13:00	40	
	요 가	"	매주 월,목	15:00~16:30	25	
	일본어 회화	"	매주 월,수	10:00~11:30	20	
	영어 회화	"	매주 화,목	09:30~11:00	20	
	중국어 기초	"	매주 월,수	13:30~15:00	20	
	서예교실	"	매주 수,금	11:00~12:30	20	
	재테크교실	"	매주 토	10:00~11:30	30	
	어린이풍물교실	"	매주 일	10:00~12:00	40	
	어린이 미술교실	"	매주 일	15:00~17:00	20	
	독서아카데미	"	매주 월,수	15:00~16:30	20	
	리본공예	"	매주 화,금	15:00~16:30	20	
	탐라문화기행	"	매주 일	11:00~17:00	30	
	인터넷검색	"	매주 월,수,금	09:30~11:00	20	
	훈글 97	"	매주 화,목,토	09:30~11:00	20	
	노인 정보교육	"	매주 화,목,토	15:00~16:30	2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일도2동	어린이 정보교육	일도2동사무소	매주월,수,금	16:30~18:00	20	
이도1동	풍물교실	이도1동복지회관	매주 화	15:00~17:00	20	
	고전무용(초급)	이도1동사무소	매주 수, 토	09:00~10:00	20	
	고전무용(중급)	이도1동사무소	매주 수, 토	10:00~11:00	20	
	고전무용(고급)	이도1동사무소	매주 수, 토	11:00~12:00	20	
	민요교실	이도1동사무소	매주 화	11:00~12:00	20	
	영어회화	이도1동사무소	매주 수, 금	10:00~11:00	10	
	서예교실	이도1동사무소	매주 수, 금	17:30~19:00	10~15	
	사군자교실	이도1동사무소	매주 토	10:00~12:00	10~15	
	한지공예	이도1동사무소	매주 월	10:00~11:30	10~15	
	요가건강	이도1동사무소	매주 수, 목	13:00~14:00	30~40	
	댄스스포츠	이도1동사무소	매주 목, 금	15:00~16:00	30~40	
	다도교실	이도1동사무소	매주 월	10:00~12:00	10	
	볼링교실	이도1동사무소	매주 화, 목	10:00~11:30	30~40	
	수의제작	복지회관	2004. 연중	17:00~23:00	40	
	문고운영	복지회관	매일	17:00~23:00	40	
PC운영	동사무소	매일	09:00~18:00	15		
이도2동	발건강관리 및 스포츠맞사지	문화관람실	매주 수	14:00~16:00	20	
	구슬공예	문화창작실	매주 화	10:00~12:00	20	
	퀼트(기초)	"	매주 수	10:00~12:00	20	
	천연염색 및 조화	"	매주 화	14:00~16:00	20	
	고려수지침	"	매주 금	10:00~12:00	30	
	건강스트레치와 태극기공	문화관람실	매주 월	10:00~12:00	3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이도2동	즐거운가요부르기	"	매주 수	10:00~12:00	130	
	댄스스포츠	"	매주 화,목	10:00~12:00	40	
	풍물교실(기초)	"	매주 목	16:00~18:00	20	
	결공문화학교(중급)	"	매주 목	18:00~20:00	30	
	영어기초회화	문화창작실	매주 목	11:00~13:00	20	
	중국어기초회화	"	매주 목	14:00~15:00	20	
	일본어기초회화	"	매주 월	10:00~12:00	20	
	전통한지공예	"	매주 금	14:00~16:00	20	
	여성축구교실	도남초등학교 운동장	매주 월, 수, 금	14:00~16:00	25	
	컴퓨터교실	정보교육실	매주 수	14:00~16:00	20	
삼도1동	서예교실	주민자치센터	매주 월, 수	18:00~20:00	22	
	실버서예교실	삼도1동 복지회관	매주 토	13:00~17:00	10	
	컴퓨터강좌	주민자치센터	매주 월~금	10:00~12:00	13	
	생활영어	"	매주 월, 수, 금	15:00~16:30	15	
	풍물교실	서광경로당	매주 토	10:00~12:00	22	
	일본어 회화	동사무소	매주 월, 수, 금	13:00~15:00	15	
	퀵 트	"	매주 목	10:00~12:00	18	
	사 군 자	"	매주 화, 목	10:00~11:00	19	
	가요교실	"	매주 금	14:00~16:00	37	
	노인컴퓨터교육	3층컴퓨터교육장	매주 월, 수, 금	10:00~11:30	10	
	컴퓨터교육	3층컴퓨터교육장	매주 화, 목, 토	10:00~11:30	10	
	풍물교실(초급)	2층다목적실	매주 목	13:30~15:30	20	
	풍물교실(중급)	2층다목적실	매주 목	15:30~17:30	3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삼도2동	스포츠댄스교실	"	매주 월,화	14:00~15:00	25	
	어린이중국어 회화반	2층사랑방	매주 월,수,금	15:30~16:30	10	
	요가교실	2층다목적실	매주 월,수	16:00 ~17:00	30	
	가요교실	"	매주 수요일	14:00 ~16:00	30	
	염색 및 규방공예	2층문화사랑방	매주 월요일	10:00 ~12:00	10	
	다도교실	2층다목적실	매주 금요일	10:00 ~12:00	20	
	서예교실	2층다목적실	매주 수요일	10:00 ~12:00	20	
	일본어회화기초	3층문화창작실	매주 월,목	10:00~12:00	20	
용담1동	배드민턴교실	한천교체육관	주7회	19:00~21:00	50	
	풍물민요교실	노인회관	매주목	15:00~17:00	20	
	컴맹탈출정보화 교실	정보화실	주5회	10:00~11:00	3	
	서예교실	다목적실	수,목	16:00~18:00	20	
	요가교실	노인회관	화,목	17:00~18:00	30	
용담2동	풍물교실	문화관람실	매주 목	14:00~16:00	30	
	에어로빅	월성마을회관	매주 화,수,목,금	20:00~21:00	30	
		문화관람실	매주월,화,금	18:30~19:30	30	
	댄스스포츠	문화관람실	매주 수,목	18:30~19:30	30	
		용화마을회관	매주 수,목	20:00~21:00	30	
	서예교실	용화마을경로당	매 주화,수,목	10:00~12:00	20	
	가요교실	문화관람실	매주 수	16:00~18:00	30	
	바둑교실	문화사랑방	매주 화,금	16:00~18:00	30	
	명상요가수기 발 건강교실	문화사랑방	매주 수	10:00~12:00	30	
단학교실	문화관람실	매 주월,수,목	11:00~12:00	3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용담2동	일본어 교실(초급)	문화창작실	매주 화,금	10:00~12:00	15	
	일본어 교실(중급)	문화창작실	매주 화,금	15:30~17:30	20	
	탁종이공예	문화창작실	매주 월	10:00~12:00	20	
건입동	컴퓨터기초교실	동사무소	매주 월,수,금	10:00~11:30	10	
	종이접기교실	"	매주 화, 목	10:00~11:30	15	
	태극권수련교실	"	매주 월,수,금	12:00~13:30	18	
	댄스스포츠교실	"	매주 월,목	10:00~11:30	17	
	풍물교실	마을포제단	매주 화,목	10:00~12:00	23	
	노인탁구교실	마을회관	매주 수, 토	15:00~17:00	12	
	노인게이트교실	게이트볼장	매주월,수,목	07:00~09:00	30	
	사라봉퍼수대운영	사라봉일대	연중	수시	25	
화북동	댄스스포츠교실	금산마을회관	매주 금, 토	20:00~21:00	40	
	요가교실	청소년문화의집	매주 수,금	11:30~12:30	30	
	풍물교실	"	매주 화,목	19:00~20:00	20	
	정보화교실(실버반)	주공3단지 문화센터	매주 월~금	13:00~14:00	10	
	정보화교실(중급반)	"	매주 화,목,토	14:30~16:00	10	
	정보화교실(기초)	"	매주 월,수,금	14:30~16:00	10	
	어린이영어교실(기초)	월리비스쿨	매주 화,수	14:00~15:00	15	
	어린이영어교실(중급)	"	매주 화,수	15:00~16:00	15	
	세이프생활체조	청풍경로당	매주 금	13:00~14:00	60	
삼양동	컴퓨터교실	삼양동 정보화교육장	매주월,화(1조) 매주수,목(2조)	15:30~17:00	34	2개 편성
	요가교실	삼양동마을회관	매주 월,목	10:00~11:30 13:30~15:00	84	2개 편성
	서예교실	삼양동사무소	매주 화, 목	10:00~12:00	2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삼양동	어린이 영어교실	삼양동사무소	매주 월,수	15:00~17:00	20	
	댄스스포츠 교실	삼양2동마을회관	매주 월,화	20:00~21:00	45	
	충효교실	도련2동마을회관	하계 동계방학기간중	19:00~20:30	40	
	수직공예 리본공예	삼양동 다목적회의실	매주 수요일	13:00~14:30	20	
봉개동	어린이그림교실	봉개동새마을문고	매주 토,일	14:00~16:00	20	
	한문교실	"	매주 토,일	17:00~18:00	15	
	서예교실	"	매주 수,목	17:00~19:00	10	
	공 부 방	"	년중	10:00~24:00	20	
	어린이바둑교실	"	매주 일요일	15:00~17:00	20	
	풍물교실	문화의 집	월-화	19:00~21:00	20	
	건전가요	"	수	19:00~21:00	20	
	스포츠댄스	"	금	19:00~21:00	15	
	요가교실	"	매주 목	18:00~20:00	20	
	도예교실	회천도예교실	매주 수요일	14:00~16:00	15	
아라동	풍물고급반	동사무소	매주 월	19:00~21:00	35	
	한지공예	동사무소	매주 금	10:00~12:00	25	
	단전호흡(월두)	월두회관	매주 월,수,금	20:00~21:00	34	
	요가(인다 1반)	인다경로당	매주 월,수,금	18:30~20:00	41	
	요가(인다 2반)	인다경로당	매주 월,수,금	20:00~21:30	25	
	요가(금천)	금천회관	매주 화,목,토	20:00~21:30	25	
	요가(오등)	오등회관	매주 월,수,금	19:00~20:30	36	
	댄스스포츠(영상)	영상회관	매주 수,목,금	20:00~21:30	30	
	고전무용반(영상)	영상회관	매주 화,토	20:00~22:00	33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아라동	컴퓨터기초	영상정보센터	매주 월~금	10:00~11:30	16	
오라동	컴퓨터교실(기초,고급)	동사무소	기초 : 화 고급 : 목	10:00~12:00 10:00~12:00	각10	
	풍물교실(기초,고급)	"	기초 : 수 고급 : 목	20:00~21:00	고급30 초급20	
	생활요가교실	"	화, 목	17:00~18:00	20	
	일어교실	"	화, 금	19:30~20:30	20	
	댄스스포츠교실	오라1동경로당	월,화	19:00~20:00	30	
	노래교실	동사무소	월	18:30~20:30	30	
	차밍댄스교실	동사무소	화, 목	18:30~19:30	30	
	어린이풍물교실	오라초등학교	화,목	08:00~09:00	30	
	노인건강체조	오라3동경로당	화	11:00~12:00	30	
	노인풍물교실	공설경로당	수	19:00~20:00	30	
연동	스포츠댄스	종합복지회관	매주 월,화,목	15:00~16:00	70	
	건전가요	"	매주 월	11:00~12:00	100	
	단전호흡	"	매주 화,수,금	04:00~15:00	40	
	수 지 침	문화창작실 (동사무소1층)	매주 수	13:00~16:00	30	
	풍물교실	종합복지회관	매주 금, 토	10:00~12:00	25	
	서 예	문화창작실 (동사무소1층)	매주 금, 토	10:00~12:00	20	
	사 군 자	"	매주 월, 수	10:00~12:00	20	
	퀵 트	"	매주 화	10:00~12:00	20	
	스포츠 및 발맞사지	종합복지회관	매주 목	13:00~15:00	30	
	일본어	문화관람실 (동사무소2층)	매주 화, 금	10:00~12:00	30	
	천연염색	문화창작실 (동사무소1층)	매주 화	14:00~16:00	20	
	요 가	종합복지회관	매주 월,화,목	10:00~11:00	5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인원	비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연동	다도교실	문화관람실 (동사무소2층)	매주 화	14:00~16:00	30	
	중국어	문화창작실 (동사무소1층)	매주 월, 목	15:00~17:00	30	
	연동민속보존회	종합복지회관	매주 수	10:00~12:00	26	
	부부합창단	종합복지회관	매주 화	19:00~22:00	60	
	영어교실	문화창작실 (동사무소1층)	매주 일	16:30~18:00	15	
	한라소년합창단 풍물놀이패	문화관람실 (동사무소2층)	매주 일	13:00~15:00	20	
	남성합창단	종합복지회관	매주 목	19:30~22:00	30	
	플룻교실	종합복지회관	매주 일	16:00~18:00	25	
노형동	컴퓨터기초	동사무소	월, 화	17:00~18:00	10	
	댄스스포츠	이마트교육장 해안경로당 원노형경로당	월, 화, 수 화, 토 월, 수	19:00~20:00 19:00~21:00 19:00~21:00	25	
	서예교실	동사무소	월, 화	14:00~16:00	25	
	너호흡(요가) 교실	"	수, 목	19:00~20:00	25	
	영어교실	"	목, 금	19:00~20:00	10	
	중국어교실	"	목, 금	19:00~20:00	10	
	분재교실	동, 신비원	금, 토	10:30~11:30	12	
	독서지도교실	동사무소	수, 목	10:30~11:30	10	
	풍물교실	원노형마을회관	화, 금	19:00-21:00	30	
	탁구교실	삼다탁구장	월-금	10:00-12:00	50	
	무료이·미용실 운영	동사무소 이·미용실	매월1일	13:00~16:00	25	
외도동	컴퓨터교실(초급)	동사무소 내 빛소리방	매주 월, 수, 금	15:00~16:30	10	
	컴퓨터교실(중급)	동사무소 내 빛소리방	매주 화,	15:00~16:30	10	
	서예교실	동사무소 다목적실	매주 월, 목	13:00~14:30	20	
	풍물교실	도평 청소년 문화의집	매주 화, 목	19:00~21:00	30	

동 별	프로그램명	운 영 계 획			수강 인원	비 고
		장 소	운영일정	시 간		
외도동	수영교실(초급)	외도실내수영장	매주 월,수,금	11:30~13:00	30	
	댄스스포츠교실	동사무소 다목적실	매주 화,수	14:30~16:00	30	
	에어로빅교실	외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매주 월~금	20:00~21:30	30	
	요가교실	제주유도회관	매주 월,수,금	17:30~19:00	30	
	쿼트교실	동사무소 다목적실	매주 월,목	10:00~11:30	20	
	발맞사지교실	제주유도회관	매주 월,금	14:00~15:30	20	
이호동	인터넷반	백포경로당 컴퓨터교실	매주 월~금	15:30~16:30	15	
	풍물놀이	백포경로당	매주 월,수,금	14:00~16:00	20	
	중국어반	동사무소 회의실	매주 월,수,금	15:30~17:30	16	
	스포츠댄스	오도마을회관	매주 목, 금	12:00~13:00	10	
	영어회화반	제주대학교 외도캠퍼스	매주 월,수,금	10:00~12:00	6	
	종이공예반	동사무소회의실	매주 화	14:00~15:00	12	
	요 가 반	오도마을회관	매주 화, 목	11:30~12:30	16	
	어린이 축구교실	이호해수욕장	매주 일	8:00~10:00	16	
도두동	컴퓨터정보교실 (성인)	동사무소 정보화교실	매주 월, 수	10:00~11:00	12	
	컴퓨터정보교실 (학생반)	"	매주 월,수,금	15:00~16:00	16	
	한지공예 교실	동사무소다목적실	매주 화	10:00~11:00	16	
	요가교실 (도두1동)	도두1동 경로당	매주 화, 목	11:00~12:00	20	
	요가교실 (신성마을)	신성마을 경로당	매주 월, 수	19:00~20:00	20	
	독서논술 교실	도두1동마을문고	매주 화, 토	화 19:00~20:00 토 16:00~18:00	20	
	서예 교실	"	매주 월	19:00~20:00	18	

4. 제주시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동 별	시 설 현 황		
	시설명	면적(m ²)	시설내역
일도1동	만남의공간	33	컴퓨터1, 도서1,500권, 오디오1
	노인의쉼터	33	TV1,냉장고1,정수기1,냉난방1,물리치료기1
	인터넷교실	30	컴퓨터12, 책상·의자12, 냉난방기1
	다목적실	50	냉난방기1, 책상·의자20
	동민사랑방	13	테이블2, 의자10
	취미교실	50	냉난방기1, 매트리스시설1, 썬크대1, 체력단력기구1, 물리치료기1, 대형거울2 등
	동아리방	26	이·미용시설3조, 물품보관함
일도2동	무료이·미용실	36	이·미용의자3, 세면대, 접의자20, 쇼파3
	문화관람실	152	의자120, 방송시설, LCD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문화창작실	40	다용도탁자4, 의자24
	문화사랑방	20	다용도탁자2, 의자10
	정보화교육장	46	컴퓨터20, 프린터기4
	유아놀이방	23	유아놀이기구
	AV감상실	10	평면TV1, DVD1, VTR1
	안내데스크 및 휴게실	76	비디오부스4, CD부스3, 인터넷부스4, 도서923, 비디오321, CD318, DVD116
이도1동	PC방	73	컴퓨터1, 책상3, 의자3
	대화방	40	탁자2, 의자12
	다목적실	109	냉·난방기1, 대형거울1, 알림판1
이도2동	노래연습장 및 DDR방	33	노래기기2대, DDR기1

동 별	시 설 현 황		
	시설명	면적(m ²)	시설내역
이도2동	유아놀이방 문화사랑방	40	놀이기구2세트, 탁자1세트
	정보과교육실 문화관람실	198	컴퓨터21, 냉난방기2, 영상기기1
	문화창작실외 5	119	냉난방기1, 오디오1, 도서107, 비디오332
삼도1동	정낭방	30	컴퓨터교실(컴퓨터13, 책걸상13, 칠판1)
	알뜰매장	36	재생비누제작기, 재생의류
	어린이정보방	3	컴퓨터2, 책상2, 의자2
	미니독서코너	17	도서500권, 책상1, 의자8
	열린방	89	다목적공간(냉난방기, 대형TV, 비디오)
	벚꽃방	46	소회의, 취미교실(책상6, 의자30, 칠판1)
	주민사랑방	23	상담, 휴식공간(컴퓨터1, 책상1, 의자8)
삼도2동	인터넷 정보방	33	컴퓨터3, 책상3, 의자3
	사랑방	17	대형탁자2, 의자15, 냉난방기1
	쉬는광	13	탁자3, 의자10
	다목적실	132	탁자12, 의자100, 냉난방기1
	컴퓨터교실	50	컴퓨터20, 책걸상20, 칠판1, 교육기자재1
용담1동	다목적용도실	142	탁자20, 의자20, 앰프시설1, 정수기1, TV1, 흡판1
	인터넷방	102	컴퓨터10, 책상10, 의자10
용담2동	유아놀이방	41.5	미끄럼틀1, 공놀이통1, 의자2
	문화창작실, 사랑방, AV감상실, 휴게실	734	컴퓨터7, 프린터2, 냉난방기4, TV5, 탁자5, 의자36
	문화관람실	734	회의탁자13, 앰프1, 대형비디오1, 의자100, 냉난방기1
건입동	민원인휴게실	23	TV1, 비디오1, 탁자2, 장의자2, 의자4, 정수기1, 커피자판기1

동 별	시 설 현 황		
	시설명	면적(m ²)	시설내역
건입동	문화공간방	23	바둑, 장기4, 탁자2, 소파2
	다목적회의실	149	회의탁자12, 의자50, 비디오1, TV1, 칠판1, 냉난방기1, 앰프1
	정보화교실	33	컴퓨터10, 프린터기1, 책걸상10, 칠판1
	다목적실	172	냉난방기1, 앰프1, 탁자2, 의자20
화북동	동민휴게실	10	탁자2, 소파3, 음수대1, 전화기1, TV1
	다목적실	13	회의용 원형탁자 및 의자 35인용
	간담회실	17	전화기1, TV1, 탁자1, 소파4
	열린공부방	20	컴퓨터6, 도서550, 독서대1, 책걸상8
삼양동	인터넷 검색대	10	컴퓨터2, 프린터1
	다목적회의실	102	회의용탁자12, 의자50, 냉난방기1
	컴퓨터교육장	50	컴퓨터14, 프린터2, TV1
	소회의실	23	책상1, 의자1, 응접탁자1, 소파2
	동민휴게실 독서교실	44	컴퓨터1, 바둑판9, 응접탁자5, 소파4, 도서517
	무료이·미용 봉사실	23	이·미용의자1
봉개동	인터넷정보방, CD·비디오 부스	66	컴퓨터5, 비디오2, CD기기2, 프린터기1
	정보자료실 문화사랑방	83	도서2,300, 냉난방기1, 복사기1
	다목적홀 AV감상실	182	오디오세트1, 영상시설1, 냉난방기1
	문화창작실	60	컴퓨터5, 테이블세트5
아라동	인터넷 사랑방	13	컴퓨터5, 책상5, 의자5
	다목적실	96	냉난방기1, 의자80, 회의용탁자15
	어학실	22	책상8, 의자16, 칠판1

동 별	시 설 현 황		
	시설명	면적(m ²)	시설내역
아라동	취미교실	22	다목적탁자1, 칠판
오라동	대회의실	195	칠판1, 의자200
	소회의실	60	탁자30, 의자30
	인터넷정보방	56	컴퓨터5, 프린터1, 탁자5, 의자5, 칠판1
	동민사랑방	19	TV1, 회의용탁자2, 의자12, 냉난방기1, 서류함
	체력단련실	23	체력단련기구8종
연동	문화창작실	40	탁자5, 의자20, 에어컨1, 사물함, 서예도구
	문화관람실	126	빔프로젝트1, 탁자30, 냉방기1, 피아노1, 노래방기기1, 장고30, 북6, 팽과리6 징2 등
	문화체험실	102	안내데스크1, 컴퓨터2, CD부스4, 비디오부스4 탁자4, 의자16, 도서1,736 비디오·tape1,117
노형동	민원실 및 사무실	205	TV1, 탁자2, 소파5, 의자12
	컴퓨터실	46	컴퓨터11, 프린터1, 책상11, 칠판1
	다목적실	96	탁자11, 의자80, 이·미용대2
외도동	인터넷 이용코너	3	컴퓨터2, 책상2, 의자2
	다목적실	129	탁자10, 의자122, 냉난방기1, 칠판1, 붓, 베틀, 장구14, 북2, 팽과리6 징3 상모2, 고깔50
	정보화교육장	33	컴퓨터11, 책상11, 의자11, 냉난방기1, 칠판1
이호동	다목적실, 동민사랑방, 인터넷방	142	냉난방기1, 앰프1, 책상26, 의자50, 쇼파10 응접세트1, 칠판2, 컴퓨터10, 프린터기1 등
도두동	인터넷 정보검색대	7	컴퓨터1, 책상, 의자1
	정보화교실	23	컴퓨터8, 책상8, 의자8, 프린터기1, 화이트보드1
	다목적회의실	126	회의탁자12, 오디오1, 냉난방기1